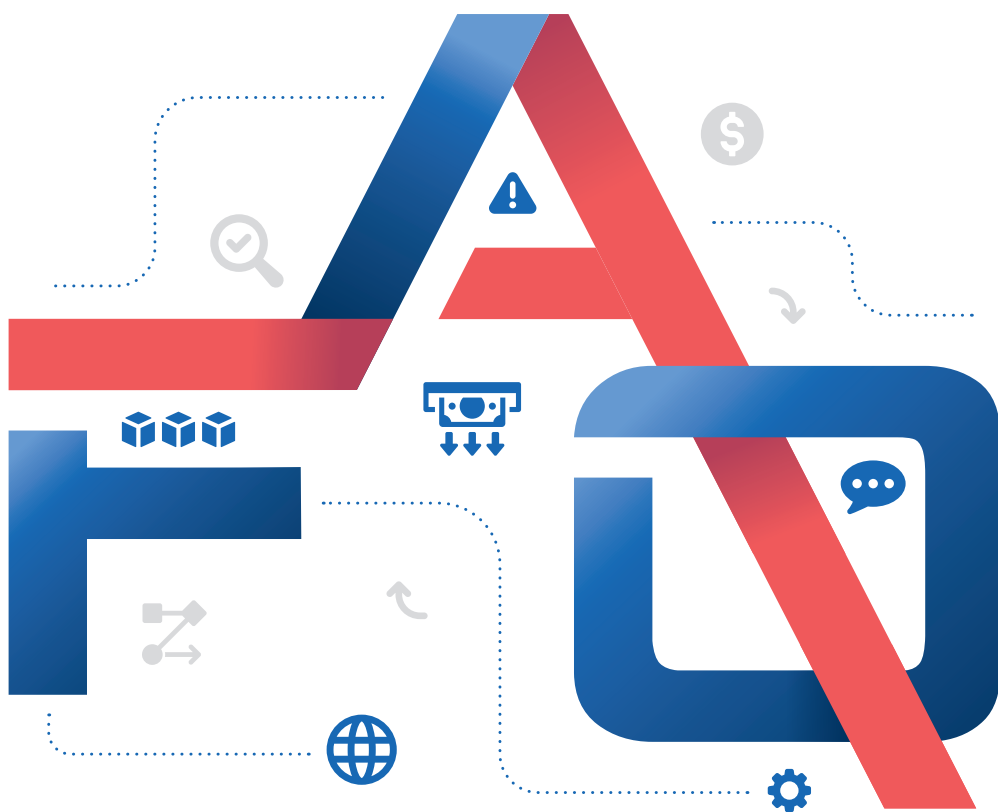


#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1. 정의

- Q 1** 외국인직접투자란 무엇인가? p.14
- Q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 p.14
- Q 3**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는 출자목적물이란? p.15
- Q 4** 2명 이상의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이 되나? p.16
- Q 5** 외국인이 국내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직접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 p.16
- Q 6**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p.16
- Q 7**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 p.17
- Q 8**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예 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 p.18
- Q 9**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p.19
- Q 10**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단독으로 투자할 수 없고 반드시 한국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업종이 별도로 있는가? p.19
- Q 11** 외국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예 해당될 수 있는가? p.20
- Q 12** 자본금 20억 원(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4,000 주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p.21
- Q 13** 국내 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의결권 있는 주식 100% 보유)가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p.21
- Q 14** 외국인이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 5%를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 p.21
- Q 15**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예 해당되는가? p.22
- Q 16**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의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되는가? p.22
- Q 17**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인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p.22
- Q 18** 국내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를 인수한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볼 수 있는가? p.23
- Q 19** 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p.23
- Q 20** 외국투자자가 증고 자본채를 현물 투자할 수 있나? p.23
- Q 21** 자본재에는 제조업관련 기계 등의 시설들만 포함되나? p.24

- Q 22 외국인 소유한 한국 내 토지로 기존주식을 취득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로 인정이 되는지? p.24
- Q 23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나? p.24
- Q 2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유지되는지? p.25
- Q 25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p.26
- Q 26 최초 대부계약 상에는 대부기간이 5년 미만인 되어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계약변경을 통하여 대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p.27
- Q 27 장기차관 제공 이후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p.27
- Q 28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시설자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p.27
- Q 29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가 성립되는지? p.28
- Q 30 국내기업의 우선주를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p.29
- Q 31 외국인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Tax-haven지역에 설립한 Paper Company를 통하여 국내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가? p.29

## 2. 신고등록

- Q 32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상에 투자금액으로 기재되지 않는 이유는? p.32
- Q 33 외국인투자신고는 온라인 또는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한가? p.32
- Q 34 외국인투자자 완료되면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p.33
- Q 3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p.33
- Q 3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p.34
- Q 37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 인정 여부 및 인정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p.34
- Q 38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절차는? p.35
- Q 39 외국인투자기업이 장기차관이 아닌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한지? p.35
- Q 40 외국인이 투자한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p.36
- Q 41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장기차관자금을 5년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 p.37
- Q 42 외국투자자가 직접 송금 또는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 되는가? p.37
- Q 43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신고 후 취득대금을 분할 지급 정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분등록이 가능한지? p.38
- Q 44 설립하려는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송금 방법은? p.38
- Q 45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송금할 때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지? p.39
- Q 46 외국투자자가 투자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에서 한화를 송금하여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p.39
- Q 47 외국인투자자신고를 하고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 조항이 있는가? p.40
- Q 48 외국인 개인이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 20%를 취득하려고하며 취득금액은 9천만원 상당인데,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식 취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p.40

- Q 49 외국인투자 지분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제출할 서류는? p.41
- Q 50 외국인투자기업 간 흡수합병 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p.41
- Q 51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행정절차는? p.42
- Q 52 외국투자가 (A)가 외국기업(또는 기존 외국투자가) (B)에게 피흡수합병 소멸된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절차는? p.42
- Q 53 외국투자가 (A)가 외국인투자기업(합) 주식 전량을 외국 기업 (B)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절차는? p.43
- Q 54 외국투자가 (A)가 외국인투자기업(합) 주식 전량을 국내 기업(을)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등록 절차는? p.43
- Q 55 외국투자가 (A)가 외국인투자기업(합) 주식 전량을 외국 모기업 (B)에 현물배당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등록 절차는? p.44
- Q 56 KOTRA가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KOTRA가 아닌 거래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p.44

### 3. 법인설립

- Q 57 한국 내 회사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p.48
- Q 58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p.49
- Q 59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의 장점을 각각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p.50
- Q 60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p.50
- Q 61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를 선정할 때 한국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p.52
- Q 62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를 할 때 영문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가? p.52
- Q 63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제출서류는? p.52
- Q 64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p.54
- Q 65 법인 설립 시 외국투자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p.55
- Q 66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p.56
- Q 67 외국인이 현금이 아닌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p.57
- Q 68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 면허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점 주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는 경우 3배 증가되어 납입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증가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p.57
- Q 69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은? p.57
- Q 70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 등을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자금 용도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법인설립등기 전에는 인출 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p.58
- Q 71 법인설립 시 주금납입 방식과 잔액증명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p.59
- Q 72 외국인이 투자한 돈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 p.59

## 4. 부동산 취득

- Q 73 외국투자가가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p.62
- Q 74 외국인으로서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계약체결 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p.63
- Q 75 외국인이 한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p.64
- Q 76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대금은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 p.65
- Q 77 임원의 과반수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법인인 경우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p.65
- Q 78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국내 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p.66
- Q 79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p.66
- Q 80 외국인투자기업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가? p.66
- Q 81 외국인이 한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p.67

## 5. 조세 및 회계

- Q 82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 종류와 세율은? p.70
- Q 83 외국인투자기업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p.70
- Q 8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측면의 차이는 무엇인가? p.71
- Q 85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이며 처리기한은? p.73
- Q 86 한국의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p.73
- Q 87 이전가격(Transfer Price) 과세제도가 무엇인지? p.74
- Q 88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상 차이는? p.74
- Q 89 외국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되는 요건 및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는? p.74
- Q 90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변경) 중 손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의 한도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 p.75
- Q 91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상 차이는? p.76
- Q 92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는 제3자에게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나? p.76
- Q 93 한국에 회의 목적으로 온 외국법인(외국사업자)이 국내에서 사업상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p.76
- Q 94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p.77
- Q 95 수입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주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p.78
- Q 96 과소자본세제란? p.78
- Q 97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우대내용은? p.79
- Q 98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 소득세 우대내용은? p.80

- Q 99** 외국인투자로 인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받았지만 추후 해당 감면받은 조세가 추징되는 사유는? p.80
- Q 100**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수입 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p.81
- Q 101** 도지사에 의해 지정·고시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도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p.81
- Q 102**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방법은? p.81
- Q 103**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p.82
- Q 104**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 4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p.82
- Q 105**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만약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p.82
- Q 106**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p.83
- Q 107** 2019.1.1. 이후에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지방세와 관세 등(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은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니 지방세도 2020.1.1. 부터는 감면이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지방세도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인가? p.83
- Q 108**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p.83
- Q 10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외국인투자에 기초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 받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p.84
- Q 110**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p.85
- Q 11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도 감면대상 지방세인가? p.86
- Q 112**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인 경우 급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본국에서도 또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가? p.86
- Q 113**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경우는? p.86
- Q 114**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국내 파견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p.87

## 6. 입지

- Q 115**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할 때 입주 계약 시점까지 투자 금액이 전부 투자 완료되어야 하는가? p.90
- Q 1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및 입주자격, 입주혜택은? p.90
- Q 11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분량 및 임대 한도가 있는지? p.92
- Q 118**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p.92
- Q 119** 공장설립 절차는? p.93
- Q 120** 모든 공장이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p.93
- Q 121**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타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현황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p.93

- Q 122**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지? p.94
- Q 123**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장건축 허가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는지? p.94
- Q 124**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설립은? p.94
- Q 125**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등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p.95
- Q 126**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을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절차는? p.96
- Q 127** 기준공장면적률이 적용되어 건축 및 등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해야 하나? p.96
- Q 128** 국내에는 공장이 없고 외국에 현지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지? p.96
- Q 129** 공장의 확장과 부대시설의 보완 등으로 공장이 여러 개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장등록 방법은? p.96
- Q 130**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는지? p.97
- Q 131**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입지제도의 유형 및 각각의 특징은? p.97
- Q 132**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토지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p.98
- Q 133** 외국인투자 합작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외국인투자의 투자 없이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증자를 하게 되어 외국인투자자본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입주 자격 미준수로 인한 현실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p.99
- Q 134**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은 얼마인가? p.99
- Q 135** 장기차관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입주한도를 충족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계속하여 입주가 가능한가? 또한 임대료 감면이 가능 한가? p.100
- Q 136**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후 입주기업은 언제까지 사업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p.100
- Q 137**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p.100
- Q 138**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부지를 임대 받는 기업도 현금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p.100
- Q 13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 p.101
- Q 140**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국 투자가 A가 미화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AK를 설립하고 일본 투자가 J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화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JK를 설립하는 경우 AK 및 JK 사업부지를 묶어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 정할 수 있나? p. 101
- Q 141**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내부의 생산설비를 모두 해체하고 새로운 제조설비를 기존공장 건물 내에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인정 받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금액은 5천만 달러이고 업종은 제조업) p.102
- Q 142**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순수 국내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가? p.102
- Q 14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데 당초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자로부터 미화 1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고 개별형 외 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았으나 이후 사정이 생겨 투자 금액을 미화 5천만 달러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p.103

## 7. 노무

- Q 14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란? p.106
- Q 145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휴일·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하는지? p.106
- Q 146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는? p.107
- Q 147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p.108
- Q 148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p.108
- Q 149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계약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나? p.110
- Q 150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 가능한지? p.110
- Q 1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가산임금은? p.110
- Q 152 일반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적용해야 하나? p.111
- Q 153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사내 이메일로 할 수 있는지? p.112
- Q 154 해고예고 통보 시 법정 해고예고 기간인 30일에서 5일이 부족 할 경우, 5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p.112
- Q 15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퇴직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p.113
- Q 15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p.113
- Q 157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p.115
- Q 155 직무에 적합한 직원의 채용과 그렇지 못한 직원의 해고가 어려운 바 직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가? p.115
- Q 159 최저임금 산정 시 209시간의 근거는 어떻게 산정 되었는가? p.116
- Q 160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 인가? p.116
- Q 161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여야 하는가? p.117
- Q 162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p.117
- Q 163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가능한 경우는? p.117
- Q 164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D-8 비자 소지자)인데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p.118
- Q 165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p.119
- Q 166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p.119
- Q 167 새롭게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가? p.120
- Q 168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p.120
- Q 169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나 비교 자료 등이 있는지? p.121

## 8. 환경

- Q 170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환경관련 법령은? p.124
- Q 171 통합환경허가란 무엇이며, 그 대상과 허가절차는? p.124
- Q 172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환경법령은? p.125
- Q 173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취급하는 기업이 등록, 신고 관련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p.127
- Q 174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p.127
- Q 17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신고, 승인 대상은? p.128
- Q 176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의 종류와 확인, 승인 기준은? p.129
- Q 177 국가 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및 재활용 등을 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p.130
- Q 178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그 절차는? p.131
- Q 179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그 절차는? p.132
- Q 180 외국인이 대표자로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국내 소재 기업이 환경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책자금 또는 기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p.133
- Q 18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환경전문공사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p.133

## 9. 비자

- Q 182 비자(사증)의 종류 및 구분은? p.136
- Q 183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란? p.137
- Q 184 체류자격이란? p.137
- Q 185 관광통과(체류자격: B-2, 30일 또는 3개월) 사증으로 입국 했을 시 체류기간 계산시점과 만료일은? p.139
- Q 186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FISC) 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체류허가업무는 무엇인가? p.140
- Q 187 기업투자(D-8) 사증 발급 대상자의 범위는? p.140
- Q 188 외국인등록 대상자 및 외국인등록 시 첨부서류는? p.141
- Q 189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p.142
- Q 190 기업투자(D-8)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 설립이 아닌 경우 개인기업 투자도 D-8 자격을 받을 수 있나? p.142
- Q 191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유효기간 1년의 단수사증을 소지했고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국민인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p.143
- Q 192 단기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기업투자(D-8) 사증을 재외 공관에서 발급받기 위해 출국해야 하는지? p.143
- Q 193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예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 p.144
- Q 194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p.144

- Q 195 기업투자(D-8)사증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는? p.145
- Q 196 본사 또는 해외 지사에서 파견되는 파견자의 기업투자 (D-8)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는? p.146
- Q 197 기업투자(D-8)와 동반(F-3)의 비자가 2023년 5월에 만료예정이다. 그런데 D-8 자격자가 2023년 1월에 본국으로 귀임할 예정이고 자녀(중학생, 고등학생)과 아내는 학교 문제로 2023년 6월까지 남아있으려고 한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하나? p.148
- Q 198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 전입 신고 방법은? p.148
- Q 199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성명 등 인적사항, 여권의 갱신, 소속기관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방법은? p.149
- Q 200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출입국심사대가 있는지? p.149
- Q 201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의 체류편의증진을 위하여 국외에서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p.150
- Q 202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생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절차는? p.151
- Q 203 불법체류 중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에 의해 비전문 취업(E-9)자격으로 변경된 경우, 출국없이 다시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p.151
- Q 204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태국 전통 마사지업을 개업하여 외국인을 발마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Spa)직원 등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p.152
- Q 205 허위의 신분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허위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p.152
- Q 206 체류 관련 비자 발급 등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는 무엇이 있는가? p.152
- Q 207 외국인 투자가 동반(F-3) 배우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외국인 투자가(D-8) 동일하게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p.153
- Q 208 단기비자 소지자가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한 기한이 있는지? p.154
- Q 209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세금 체납을 한 경우 체류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p.154
- Q 210 기업투자(D-8)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절차 진행 시 본국에서 투자자금을 대리로 송금할 수 있는지? p.155

## 10. 관세·통관

- Q 211 외국인투자가가 자본재 관세감면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p.158
- Q 212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의 관세 등 감면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p.158
- Q 213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인지? p.159
- Q 214 자본재에 원재료도 포함되는지? p.159
- Q 215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서 자본재를 도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따라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면제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 면제한도액을 산정할 때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국내용역대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p.159
- Q 216 입국시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등을 휴대하여 입국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후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p.159
- Q 217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지? p.160
- Q 218 수출입을 하기위해 품목번호(HSK)를 알고싶는데 확인방법과 절차는? p.161

- Q 219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은? p.162
- Q 220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인증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p.163

## 11. 생활

- Q 221 외국인인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p.166
- Q 222 외국운전면허를 한국운전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한지? p.167
- Q 223 외국인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p.168
- Q 224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p.169
- Q 225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p.170
- Q 226 한국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절차는? p.172
- Q 227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p.173
- Q 228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있는지? p.174
- Q 229 한국의 주거 임대차계약방식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p.175
- Q 230 외국어 가능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리스트가 있는지? p.176
- Q 231 국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주소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p.177
- Q 232 한국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처리하는 방법은? p.178
- Q 233 위급상황 발생 시 한국어를 못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p.179



# 정의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1 정의

## Q 1 ▶ 외국인직접투자란 무엇인가?

### A 1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 이상) ②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외국투자자)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하거나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 등의 신증설에 재투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책자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외촉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 용어의 정의

구분	내용
외국인	①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②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외국정부의 대외 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④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외촉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외국투자자	• 외촉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외촉법 제2조 제1항제5호).
출자목적물	•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외촉법 제2조제1항제8호).

## Q 2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

### A 2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의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체류 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체류 허가를 받은 자

\* 영주권 보유 재외국민이 외국인으로서 투자 시 유의할 점 : 투자자금은 반드시 해외로부터 외화자금 형태로 유입되어야 하며, 재외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자산(현금, 부동산 등)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출자목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Q 3 ▶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출자목적물이란?

#### A 3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 지급수단
- 자본재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배치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국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당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주식
  2.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국내에 있는 부동산(「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취득하였다는 증빙 필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내지급수단(「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Q 4 ▶ 2명 이상의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이 되나?

### A 4

인정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각각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Q 5 ▶ 외국인이 국내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될 수 있는가?

### A 5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과학기술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위원회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것(「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 Q 6 ▶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A 6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020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20.8.5.시행)되어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의 조항이 수정, 외국인의 개인기업 단독투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화됨.
  - ※ 외국인직접투자 정의 명확화(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가목)
    -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함(제3호).
    -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주식등)을 소유하는 것(제4호가목)
- 2020년 8월 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이후에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비자발급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종전과 같이 D-8 비자와 D-9비자로 이원화된 발급 신청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Q 7 ▶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

### A 7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아닌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과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로 구분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9-32, 33조

※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를 국내 자회사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법인의 자회사는 국내법(「외국인투자 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출자가 발생하는 국내 법인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출자가 없는 외국법인의 지점(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용어사용이 필요하다.

## Q 8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

### A 8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순수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 (National treatment)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 또는 입지와 관련하여서는 순수 국내 기업보다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 · 일반적인 혜택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이익배당금 및 매각대금은 송금 당시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을 보장
- 내국민과 동등대우 :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자본재 수입신고 시 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물품명세서 검토 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 승인으로 간주

#### · 조세감면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감면대상 사업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수반사업 등)을 영위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단, 2017년 OECD의 한국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명단 포함 및 국내외 차별적 투자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부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같은 법 제116조의2)의 개정으로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은 2018.12.31.부 폐지되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세·관세 감면 혜택만 유지됨

#### · 입지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 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입 또는 임대, 매각 가능
- 국가소유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 · 관세 면제

-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입되는 경우 관세는 면제(신성장 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영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가세도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자금수단 또는 이익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자금 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변경신고일은 해당되지 않음

## Q 9 ▶ 외국인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 A 9

그렇지 않다. 개별법에서 업종별로 별도의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최저 자본금 예시

- 국제물류주선업 : 3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물류 정책기본법」 제43조)
- 토목공사업 : 5억 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10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종합여행업 :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요건을 충족시켜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외국인투자기업이 종합여행업을 하려는 경우 출자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함)(「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 Q 10 ▶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단독으로 투자할 수 없고 반드시 한국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업종이 별도로 있는가?

### A 10

대부분 한국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제한업종' 중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또는 지분비율을 제한하고 있어 반드시 한국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의해 매년 외국인투자 제한 및 제외 업종을 개정공고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제한 예시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개요	허용기준
송전 및 배전업 (35120)	생산된 전기를 특정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2. 외국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전기판매업 (35130)	가정, 산업 및 상업 등의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	※전기판매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에만 해당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240)	폐기대상인 방사성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산업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육류도매업 (46313)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 냉장, 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Q 11** ▶ 외국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

**A 11**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투자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등에 의하면 프로젝트 금융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 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고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Q 12 ▶ 자본금 20억 원(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4,000 주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12**

투자금액(2억 원)은 요건은 충족하나 외국인투자 비율은 1%이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다만,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Q 13 ▶ 국내 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의결권 있는 주식 100% 보유)가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A 13**

국내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이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우회 투자(Round Trip)라고 하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Round Trip 방식의 투자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유주체와는 무관하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 11항, 제12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체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6호)

**Q 14 ▶ 외국인이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 5%를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

**A 14**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대상이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설립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경우에도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함).

**Q 15 ▶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 투자에 해당되는가?**

**A 15**

외국투자가가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국적의 법인 또는 기업이므로 외국투자가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다른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Q 16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의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되는가?**

**A 16**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을 직접 사용 시에는 외국인투자 출자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그 소득을 적법하게 해외로 반출한 후 외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외화로 도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D-8 체류자격 심사 시에는 외국인투자 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외국인투자가가 신규 체류 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심사 요건을 별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Q 17 ▶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인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는지?**

**A 17**

주식예탁증서를 인수하는 시점에서는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식예탁증서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요건(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Q 18 ▶ 국내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를 인수한 외국인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볼 수 있는가?**

**A 18**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도 함께 부여한 사채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취득(1억 원 이상 &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이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는 취득 후 60일 이내 주식 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Q 19 ▶ 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19**

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64조에 외국인투자자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요건(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조합출자비율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볼 수 있다.

- 이와 유사하게 투자조합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53조, 「농림수산물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24조 등이 있음.

**Q 20 ▶ 외국투자자가 중고 자본재를 현물 투자할 수 있나?**

**A 20**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자본재의 정의에 따르면 중고 자본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잔존가액과 현물출자 당시의 해당 자본재의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산출할 수 있다.

### Q 21 ▶ 자본재에는 제조업 관련 기계 등의 시설들만 포함되나?

#### A 21

그렇지 않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자본재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제2조제1항 정의 규정에서 농업·임업·수산업의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등까지 자본재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2차 산업시설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Q 22 ▶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내 토지로 기존주식을 취득할 시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로 인정이 되는지?

#### A 22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필증을 필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출자목적물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 외국인 국내 거주자(화교 등)가 국내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은 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도입하여 취득한 국내 부동산만이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이 된다.

### Q 23 ▶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나?

#### A 23

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되면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 · 신고 대상 기업 규모

- 신고회사(외국투자자)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상대회사(국내기업)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자산·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 신고 대상 기업 결합

- 주식 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포함)
- 임원 겸임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영업양수 :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 신설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외국투자자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후신고 대상이나 자산 또는 매출이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사전신고(이행행위 금지)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외국환은행 등 수탁기관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이행행위 금지에 저촉되지 않음).

## Q 24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유지되는지?

### A 2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자로 본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외국인투자자가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 등의 취득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 ※ 이 경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체류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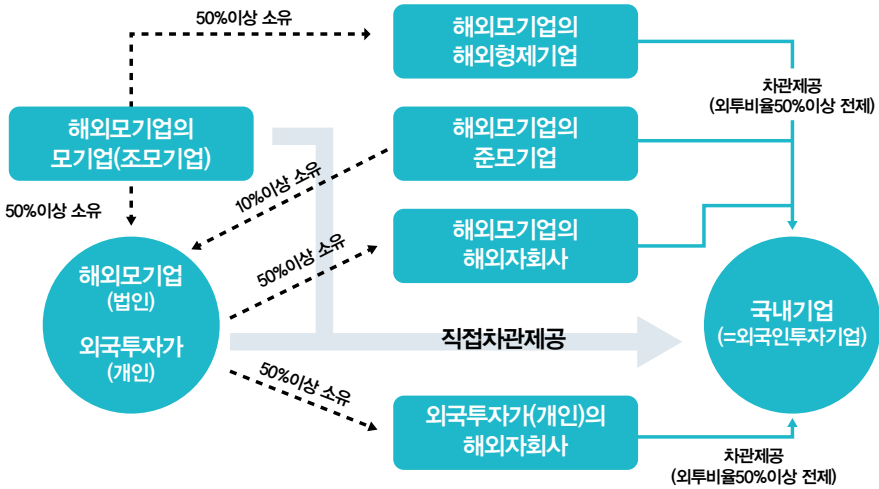
**Q 25 ▶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차관 도입 흐름**



※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장기차관은 외국인이 자본출자를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먼저 성립된 이후 그 외국인(외국투자가)이 평균차관기간(가중평균) 5년 이상의 외화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인정된다. 자본출자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거주자인 국내 기업이 외화자금 차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Q 26** ▶ 최초 대부계약 상에는 대부기간이 5년 미만인 되어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계약변경을 통하여 대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26**

외화자금이 이미 국내에 도입된 경우, 계약 변경만으로는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부자금을 일단 상환한 후 다시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외화자금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 후 투자신고를 거쳐 자금을 도입하면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된다.

**Q 27** ▶ 장기차관 제공 이후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A 27**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자본출자관계를 충족하는 한 외국인투자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Q 28** ▶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시설자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28**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 시행(20.8.5.)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방식의 외국인투자가 인정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
-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위 용도로 사용하는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액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함.

## Q 29 ▶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가 성립되는지?

### A 29

상장주식(코스닥 포함)의 주식투자는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포트폴리오투자 목적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 요건(투자금액 1억 원 및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을 충족하지 않는다.

-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인 투자금액 1억 원 및 의결권주식 10%이상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이미 취득한 주식의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 이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의한 주식(기준주)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상장주식의 주식투자는 국내은행에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 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이 계정을 통하여 증권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송금받고 원화로 환전하여 증권회사(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투자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음. 또한 국내은행에 투자자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지 않고 증권회사(투자중개업자)의 투자전용외화계정(「외국환거래규정」 제7-38조)을 이용하여 바로 외화를 송금하고 증권회사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음.

※ 현행 외촉법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외촉법 제2조 제1항제4호 가목).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보는 기준으로서는 외촉법 시행령의 규정과 같이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또는 10% 미만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원선임 등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이다.

-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 취득 시 외국인직접투자요건(금액 1억 원 및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하여야 함.

### Q 30 ▶ 국내기업의 우선주를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A 30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10% 이상 취득해야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된다.

-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므로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우선주라 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결권부 상환우선주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와 같이 취급되어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됨.
- 다만,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보통주, 우선주)와 관계없이 1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Q 31 ▶ 외국인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Tax-haven지역에 설립한 Paper Company를 통하여 국내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가?

#### A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 기타 국제경제협력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Paper Company도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투자가 제한되지 않음.
- 다만,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이 소유한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우회투자에 해당하므로 인센티브 적용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배제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1항,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제12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수익계약 체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9조제1항)
  -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6호)

The image features a solid green background. In the center, there is a large, stylized white number '2'. The number is composed of several overlapping, semi-transparent white shapes that create a layered, 3D effect. The top horizontal bar of the '2' is a solid white rectangle. The middle section is a white shape that curves to the right and then back down. The bottom section is a white shape that curves to the left and then back up. The overall design is modern and minimalist. In the upper and lower portions of the image, there are decorative elements consisting of multiple thin, white, wavy lines that flow across the frame,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 신고등록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2 신고등록

### Q 32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상에 투자금액으로 기재되지 않는 이유는?

A 32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외국인 투자로는 인정되나 등록증에 기재되는 지분투자 개념의 외국인투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 4호가목, 다목, 마목)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증상 투자금액으로 기재되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대상 외국인투자는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신주), 대금정산을 하여 주식 취득을 완료한 경우(기존주), 비영리 법인에 출연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Q 33 ▶ 외국인투자신고는 온라인 또는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한가?

A 33

현재 온라인 외국인투자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원칙적으로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의 투자신고도 가능하지 않다.

- 다만 외국투자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KOTRA 해외 투자거점무역관이 소재한 국가에서만 KOTRA 투자거점무역관을 통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음. 투자거점무역관 현황은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http://www.investkorea.org)) ▶ Invest KOREA 소개 ▶ 조직 ▶ Invest KOREA ▶ 투자거점무역관)에서 확인 가능함.

\* 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위탁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투자 거점무역관 포함)과 외국환은행(국내은행 16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21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4)

## 🏠 36개 투자거점무역관(2025. 2월 현재)

지역	국가 및 무역관명
북미(9)	- 미국(7) : 뉴욕, 실리콘밸리, LA, 시카고, 달라스,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 캐나다(2) : 토론토, 밴쿠버

지역	국가 및 무역관명
유럽(13)	- 독일(3) :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스웨덴(스톡홀름), 덴마크(코펜하겐), 스페인(마드리드),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벨기에(브뤼셀), 이탈리아(밀라노), 스위스(취리히), 오스트리아(빈)
동남아·대양주(2)	- 싱가포르(싱가포르) - 시드니
일본(4)	-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중국(6)	- 홍콩,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광저우 - 대만(타이베이)
중동(2)	- UAE(두바이)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 Q 34 ▶ 외국인투자가 완료되면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 A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신주), 대금정산을 하여 주식 취득을 완료한 경우(기존주),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출연의 경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 등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투자만 이행한 경우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할 수 있음(부분 등록).

### Q 35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 A 3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실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국내체류 비자신청이나 배당금의 대외송금,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가 완료(외국인투자요건 충족하는 일부이행의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규정된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사유발생일 : 출자목적물의 납입 완료, 주식 등의 취득 완료(주식대금 정산), 출연 완료

-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첨부서류로 요구되는 사항(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시, 「주택도시기금법」 또는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채권매입면제신청 시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업무지연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Q 36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 A 3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이미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증명서 재발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 따라서 수탁기관에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재발급이 가능함.

### Q 37 ▶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 인정 여부 및 인정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 A 37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 대부채권 자체는 출자목적물\*은 아니지만, 2012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주권납입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에 의한 상계허용(「상법」 제334조 삭제, 제421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대부채권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유권 해석으로 인정하였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에 따르면 '차관 또는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만 출자목적물임.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장기차관 원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1) 장기차관 내용 변경 신고를 통하여 출자전환에 의한 차관액을 상환처리
    - 변경된 차관계약서 첨부
  -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주식 취득 신고(출자목적물 : 채권, 신고금액 : 당초 외화차관 도착금액)
    - 회사의 차관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동의서 첨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자본등기일을 투자 도착일로 간주)

- 대부채권 현물출자 후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주명부 등 첨부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1) 지정거래외국환은행(또는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차입신고에 대한 내용 변경 신고(최초차입신고서 포함) 및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동의서 필요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주식 취득 신고(출자목적물 : 채권, 신고금액 : 당초 외화차입 도착금액)

- 최초 「외국환거래법」 차입신고서 및 도착 증빙,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 동의서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자본등기일을 투자도착일로 간주)

- 대부채권 현물출자후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 첨부

### Q 38 ▶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절차는?

#### A 38

외국투자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투자자금 유입은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금액의 증가는 없으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에 포함됨).

•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자 등기 이후 주식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무상증자를 결의한 주총 결의서 및 무상증자 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

### Q 39 ▶ 외국인투자기업이 장기차관이 아닌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한지?

#### A 39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영리법인인 거주자(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려면 장단기 구분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하다.

• 다만, 미화 5천만 달러(차입신고시점부터 과거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때 하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5천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만 신고하고 단기 외화차입이 가능함.

**🏠 5천만 달러 초과 단기 외화자금 차입 허용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허용한도**

허용대상기업	외국인투자비율	허용한도
일반제조업영위 외투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의 50/100 이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 지원 서비스업’ 영위 외투기업 (*‘17.2.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으로 대체)	1/3 미만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75/100 이내
	1/3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100/100 이내

**Q 40 ▶ 외국인이 투자한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A 40**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투자한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인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을 폐업청산하고, 그 잔여재산(원화현금)을 출자금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이 경우 개인사업자 외투기업은 개인사업자 폐업 후(관할세무서 신고) 수탁기관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 및 신규 외국인투자신고를 동시에 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음.
- 개인기업의 잔여재산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요건(1억 원 이상 및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자금을 외화로 추가 유입시켜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또는 잔액증명) 절차를 거쳐 법인설립을 하여야 하며, 법인설립과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모든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그러나 통상적인 폐업 청산을 통한 현금출자 방법 이외에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인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규정에 따라 법인기업 설립 후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외국인투자기업 등록번호 그대로 유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제출 및 개인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반납).

## Q 41 ▶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장기차관자금을 5년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

### A 41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5년 이상의 차관은 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도입한 차관을 조기(5년이내)에 상환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변경된 차관 계약서 첨부)를 마친 후 「외국환 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에 따른 대외송금절차를 따르면 됨.

## Q 42 ▶ 외국투자자가 직접 송금 또는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 되는가?

### A 42

외국투자자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나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에는 동 자금이 외국투자자의 자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외국투자자를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1호).

- 외국투자자가 직접 송금한 경우는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로 직접 휴대 반입한 경우에는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한 후에 국내은행의 투자자명의 비거주자 외화계좌에 예치함으로써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입국 시 세관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한 투자자금은 외국 투자자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국투자자 000의 0000년 0월 0일 신고한 외국인 투자자금임을 은행의 송금전문(Sent on behalf of foreign investor's name) 또는 제3자가 휴대 반입한 자금이 외국투자자 본인 자금임을 입증하는 공증서류로 확인되어야 함.
- ※ 비자 심사 시에는 제한된 대리송금 기준을 적용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확인 필요

### Q 43 ▶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신고 후 취득대금을 분할 지급 정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분등록이 가능한지?

#### A 4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 등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투자만 이행한 경우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할 수 있다(부분 등록).

- 즉 일부 지급한 대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취득한 주식비율이 10% 이상이면 투자금액은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원화 및 달러화)을 투자비율은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인수비율 만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에 기재.
- 다만 투자비율의 경우 계약에 따라 대금전액을 지급 정산하기 전에 주식전량을 양도받는 조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에 따라 인정된 투자비율을 기재하는 부분등록은 가능하나 추후 대금전액을 지급정산하지 않은 부분등록 상태에서는 주식양도나 자본감소는 인정되지 않음.

### Q 44 ▶ 설립하려는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송금 방법은?

#### A 44

먼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투자신고서를 근거로 국내은행에서 투자자금 송금을 위한 가상계좌(임시계좌)를 부여받아 투자가 명의로 투자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 또는 투자가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비거주자 외화계정)을 미리 개설하여 송금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함.

\* 비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필요서류 : 투자가 국적증명서(외국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개인 여권 등), 공증 위임장, 외국법인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등

- 이미 설립된 국내 법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국내 법인이 투자자금 수취 후 주금납입을 미이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만한 경우가 아니면 권장되지는 않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특정국가의 경우 국내 법인 계좌로 자금송금 요구)에는 국내 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진행 한 후 이를 입증하면(투자가 확인되는 송금전문과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동시 제출)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음.

**Q 45 ▶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송금할 때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지?****A 45**

원칙적으로 자금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다.

-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카지노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처 조사를 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에 따르면 카지노 설치허가를 할 때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음.
-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예 : 중국)에 거주하는 개인인 외국투자자가 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휴대 반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외화반출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관청에 동 허가서를 제출할 수 없음. 이 경우에는 외국투자자 비자(D-8) 발급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외화가 본인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 상당기간 예치되어 있었던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를 요구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함.

**Q 46 ▶ 외국투자자가 투자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 하여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A 46**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하여 환전이 국내에서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송금이 확인되는 외화매입 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외국계은행들이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외국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기 위하여 자국의 은행을 방문하면 외화를 대가로 원화를 매각하는 거래를 하고 원화실물은 한국의 거래은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에 이런 서비스 이용을 거절하고 반드시 외화를 송금하여야 함.

### Q 47 ▶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 조항이 있는가?

#### A 47

외국인투자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벌칙조항은 없다. 즉 투자신고 후 투자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언제든지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 변경 신고 대상 항목
  - 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및 투자의 방법
  -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등의 양도자
  - 그 밖에 투자형태, 투자목적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등

### Q 48 ▶ 외국인 개인이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 20%를 취득하려고 하며 취득금액은 9천만원 상당인데,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식 취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 A 48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투자 자체는 가능하다. 외국인(비거주자)이 거주자로부터 국내 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 ※ [참고]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Q 49 ▶ 외국인투자 지분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제출할 서류는?

### A 49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을 타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양수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주식취득신고 및 외투기업 변경등록 의무가 있다.

#### 1)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

- 양수 외국인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국적증명서, 양수도계약서 첨부)
- 외국인투자기업(또는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반납, 주주명부 첨부)

#### 2) 외국인투자자가 내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양도를 반영하여야 함. 단 모든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을 전부 양도시에는 외투기업 등록말로 처리됨.
- 외국인투자기업(또는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반납,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첨부)

## Q 50 ▶ 외국인투자기업 간 흡수합병 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 A 50

외국인투자기업(갑)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이 소멸되는 경우

- 소멸법인(을)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신청 필요(사유 : 피흡수합병 소멸)
- 소멸법인(을)의 외국인투자자 A는 존속법인(갑)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갑 주식의 취득 신고 필요(기존 외국인투자금액 승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3호)
- 존속법인(갑)(또는 외국인투자자 A)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

\*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갑)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A의 외국인투자금액은 실제 자금이 새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된 외국인투자기업(을)에 대한 A의 투자금액을 승계함

### Q 51 ▶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행정절차는?

#### A 51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가 기업분할(인적분할)\*하여 B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A사의 외국 투자가는 존속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가 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통하여 외국투자가의 자본감소를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또한 분할 설립되는 B사의 외국투자가는 A사와 동일인으로서 분할 감소된 A사 투자금액 만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B사 주식의 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 기업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함.

\* 기업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되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신고대상은 인적분할만 해당됨.

- 1) 인적분할의 경우 : 새로 분할 설립되는 신생기업(B)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A)의 분할 감소된 주식 과 투자금액 만큼 기존 모든 주주(외국투자자 포함)가 보유지분율대로 B주식을 새로 배분받으므로 외국인투자가의 감소된 주식과 투자금액 해당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신고대상이 됨.
- 2) 물적분할의 경우 : 새로 분할 설립되는 신생기업(B)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A)의 액면자본금 감소 없이 외투기업(A)가 신생기업(B)의 지분 100%를 자회사로 형태로 갖게 되므로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신고대상이 아님.

### Q 52 ▶ 외국투자자 (A)가 외국기업(또는 기존 외국투자자) (B)에게 피흡수합병 소멸된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절차는?

#### A 52

외국투자자 (A)는 외국기업(또는 기존 외국투자자) (B)에게 피흡수합병 소멸되면서 (B)가 외국인투자기업(갑)의 신규 주주(또는 지분증가)로 승계되는 결과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 외국기업(또는 외국투자자) (B)는 (A)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별도의 주식취득행위 없이 외국 인투자기업의 주주로 당연 승계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신고(제1호 서식)는 필요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갑)(또는 외국투자자 B)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 (제17호 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자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및 흡수합병 증빙서류, (B)의 국적증명서(기존 외국투자자 인 경우 불필요), 기존 외투기업등록증 반납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 변경된 사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변경등록이 필요하다.

### Q 53 ▶ 외국인투자자 (A)가 외국인투자기업(갑) 주식 전량을 외국 기업 (B)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절차는?

#### A 53

외국투자자 (A)가 (갑) 주식을 외국기업 (B)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B)는 (갑)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 신고를 통하여 승계 취득, 외국인투자기업(갑)은 외국인투자자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 외국기업 (B)는 외국인투자자 (A)의 (갑)주식 출자로 인하여 (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필요(제1호 서식)
  - 취득방법(제19항) : 기타 - (A)의 (갑)주식 현물출자
  - 첨부서류 : 외국기업 (B)의 국적증명서, 현물출자 증빙서류
- (갑)(또는 외국기업 B)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제17호 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인투자자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기존 외투기업 등록증 반납

### Q 54 ▶ 외국인투자자 (A)가 외국인투자기업(갑) 주식 전량을 국내 기업(을)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등록 절차는?

#### A 54

외국투자자(A)가 (갑)의 주식을 (을)에게 현물출자함에 따라 (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가 필요하며, (A)는 (을)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신청이 필요하다.

- (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필요(제17호 서식)
  - 사유 : 내국화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제2호 “외국투자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 (A)는 (갑)주식을 새로운 (을)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 (을)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필요 (제1호 서식)
  - 출자목적물 : 국내주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1항제2호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요건 충족)

- 첨부서류 : (A)의 국적증명서, 감정인의 (갑)주식평가서
- (을)(또는 외국투자가 A)은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신청 필요(제17호 서식)
  - 사유 : 신규 외국인투자
  -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또는 주식 양도양수 증빙서류)

### Q 55 ▶ 외국투자가 (A)가 외국인투자기업(갑) 주식 전량을 외국 모기업 (B)에 현물배당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등록 절차는?

#### A 55

외국투자가 (A)가 (갑)주식을 외국 모기업 (B)에 현물배당함에 따라 (B)는 (갑)에 대한 주식등의 취득신고를 통하여 승계 취득, (갑)은 외국투자가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 외국기업 (B)는 외국투자가 (A)의 (갑)주식을 현물로 배당 받음에 따라 (갑)의 주식을 취득 하게 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필요(제1호 서식)
  - 취득방법(제19항) : 기타 - (A)의 (갑)주식 현물배당
  - 첨부서류 : 외국 모기업(B)의 국적증명서, 현물배당 증빙서류
- (갑)(또는 외국 모기업 B)은 외투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제17호 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반납

### Q 56 ▶ KOTRA가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KOTRA가 아닌 거래은행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 A 56

외국인투자업무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탁기관 변경이라고 한다. 변경절차는 기존 수탁기관에 수탁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양식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 처리준칙」 별지 제2호서식(수탁기관 변경신청서)을 사용한다.

양식 다운로드

[www.investkorea.org/kr/published/presentation.do](http://www.investkorea.org/kr/published/presentation.do)



The image features a vibrant lime green background. In the center, a large, stylized number '3' is displayed. The '3' is composed of two overlapping, rounded shapes. The top shape is a light green color, and the bottom shape is white. The background is decorated with several sets of thin, white, wavy lines that flow across the frame, creating a sense of motion and depth. The overall aesthetic is clean, modern, and energetic.

3

# 법인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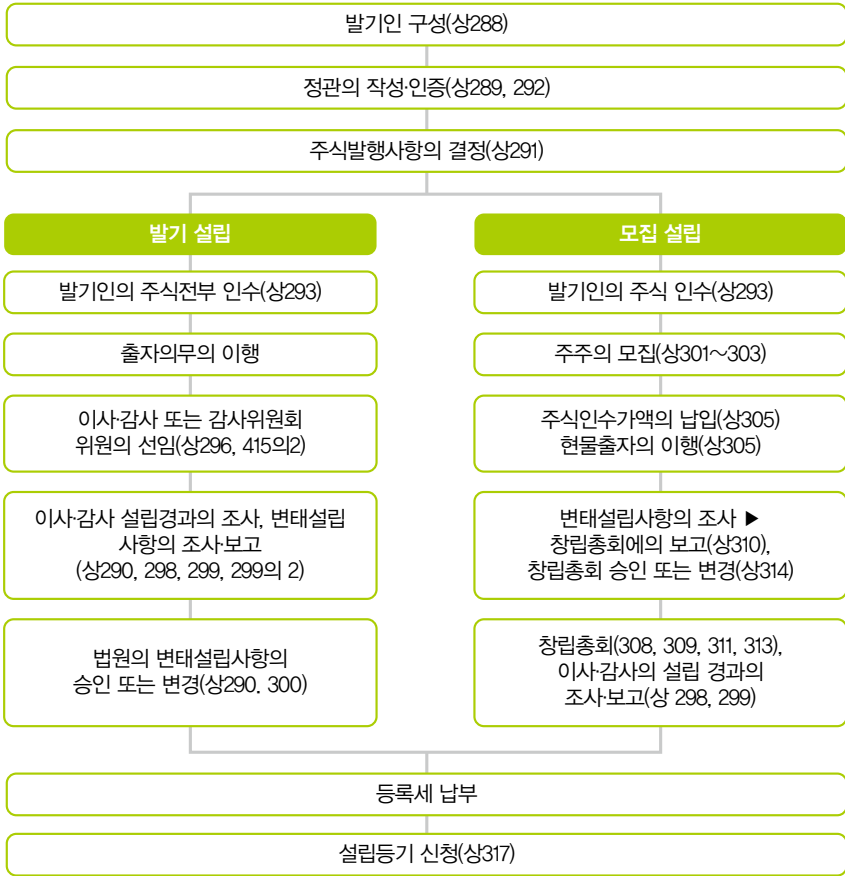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3 법인설립

#### Q 57 ▶ 한국 내 회사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57**  
 국내 「상법」상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의 5가지이나 주식 회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 도표와 같다.

####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Q 58 ▶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A 58

## • 성격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업무는 개인의 명 및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모든 채무도 동 개인인 사업주가 부담
- 법인 : 법인은 개인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모든 업무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모든 채무나 보증 등도 회사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짐. 법인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이사, 주주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 책임지지 않음.

## • 설립절차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외국인투자신고 이외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영업 가능
- 법인 : 외국인투자신고 외에 회사 설립 절차(법인등기, 사업자등록)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 상의 이유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용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소득	소득세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	당해사업년도에 증가된 순자산액에 대해 모두 과세
납세의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부담	당해사업년도에 증가된 순자산액에 대해 모두 과세
세율	6~45%	9~24%
회계연도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기간이 정해짐	사업연도를 정관에 임의로 정할 수 있음
장부 작성의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만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음	모든 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음
권리 의무주체	개인 사업자가 영리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 사업이 곧 사업주의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 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무한책임을 부담함	출자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재산이용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바로 사업주 개인의 이익에 해당됨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의 소유에 해당됨

\* 세율표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나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Q 59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의 장점을 각각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 59

####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지사설립은 자본금 없이 필요한 비용만 송금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이 가능
- 영업이익에 대하여 한국내 법인세는 동일하게 납부하지만 이익의 해외 송금 시 비과세

#### •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법인설립시 내국인 대우를 받으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 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혜택 뿐 아니라 내국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모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도 요건 충족 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감면 등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용 정도에 따라 대출 혹은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서 자본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음.
- 본사와 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영업활동의 범위도 정부로부터 인가받는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음.

### Q 60 ▶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A 60

#### •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함.

####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음.

- 연락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음.

항목	외국인투자기업	지점	연락사무소
적용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상호	제한없음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 하며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법적책임	국내 현지법인에만 귀속	본사에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2. 법원등기 3. 사업자등록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국내지사설치신고 2. 법원등기 3. 사업자등록	1. 국내지사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가 없음	장부기록의무가 없음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이하 : 9% 과세표준 2억초과 200억 이하 : 19% 과세표준 200억초과 3,000억 이하 : 21% 과세표준 3,000억 초과 : 24%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 별도부과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금액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없음

**Q 61**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를 선정할 때 한국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6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자치)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호를 선정할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http://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함.

**Q 62**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를 할 때 영문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가?

**A 62**

영문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한글 상호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음 (「상업등기규칙」 제2조).

**Q 63**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제출서류는?

**A 6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함. 우선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 때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됨.

##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제출서류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기간단축시)
7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8	이사회이사록(공증의무는 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음)
10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① 내국인 :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 ② 외국인 : 서명이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서명공증)*
18	주민등록등본(주소증명서)
19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20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1	대법원 수입증지
2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3	법인인감도장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된다.

16, 17, 18, 22번 항목은 투자국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한국 영사확인 필요하다.

### Q 64 ▶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A 64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제1항)

-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됨.
  - a. 목적
  - b. 상호
  - c.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d.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상법」 제329조제3항)
  - e. 회사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 f. 본점 소재지
  - g.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h.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90조)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음.

\*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상법」 제290조).

- a.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b.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c.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d.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한편 변태설립사항은 모집주주의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299조).

#### •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이나 회사의 영업활동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여타 기재사항들과 같은 법적 효과를 누리게 됨.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 기재사항과 차이가 있음.
-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등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함.

### Q 65 ▶ 법인 설립 시 외국투자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 A 65

외국투자가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과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개인, 법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하다. 또한 외국 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 🏠 개인투자자의 준비서류

<b>법인 인감신고서</b>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b>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b>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1. 한국/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2.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b>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b>	취임승낙서에 첨부 1. 한국/일본/대만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2. 그 외 국가 :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 (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b>위임장</b>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1. 일본/대만 :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2.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 위임장에 서명 후 공증
<b>여권사본</b>	모든 외국인

## ☞ 법인투자자의 준비서류

<b>법인등기부등본 (투자자인 법인)</b>	1. 대만/일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 통 2. 그 외 국가 : 해당국가의 법인증명서면 또는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서
<b>법인 인감신고서 (설립되는 법인)</b>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b>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b>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1. 한국/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2.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b>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b>	취임승낙서에 첨부 1. 한국/일본/대만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2. 그 외 국가 :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 (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b>위임장</b>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1. 일본/대만 :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2. 그 외 국가 : 위임장에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서명 후 공증
<b>여권사본</b>	모든 외국인

### Q 66 ▶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 A 66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 이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Q 67 ▶ 외국인이 현금이 아닌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 A 67

자본재도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의 출자목적물이므로 먼저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OTRA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도입물품(자본재)에 대하여 관할세관을 통관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한 수탁 기관에서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수탁 기관에서 검토·확인을 받은 도입 물품 명세서는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통관 후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법」 제299조, 299조의2, 4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관세청 파견관)이 현물 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는 「상법」 제299조 제1항의 ‘검사인 보고서’로 인정되므로 법인 설립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시 제출서류로 첨부하면 됨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3호).

### Q 68 ▶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 면허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점 주소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두는 경우 3배 증가되어 납입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증가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 A 68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30여개 업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열거되어 있다.

### Q 69 ▶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은?

#### A 69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자본금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다.

**🏠 회사설립비용 사례(자본금 1억 원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항목	세부내역	비용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3배 증가하므로 1.2% 적용	1,2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240,000원
대법원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30,000원
공증료	정관 등(10억 원 이하 발기설립의 경우 일부 서류 공증 면제)	약 1,000,000
합계		약 2,470,000원

※ 기타 법무사 또는 변호사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

**Q 70 ▶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 등을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자금 용도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법인설립등기 전에는 인출 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A 70**

외국인투자자금과 별도로 설립비용을 송금 받아 사용하고 설립등기가 종료되면 모회사에 반환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법인 설립 전 지출된 비용은 설립 후에 '창업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하고 모회사로부터 별도로 송금받은 비용에 대해 해외송금을 통해 채권을 갚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모회사는 한국 자회사나 지점의 설립비용을 위한 법인 설립 전 비용의 송금지출 시 '채권'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함. 또한 법인 설립 후 창업비의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창업비의 지출 시 설립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지출하고 증빙을 구비해 두어야 함.

**Q 71 ▶ 법인설립 시 주금납입 방식과 잔액증명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A 71**

주식회사 설립 시 법인등기 단계에서 법원등기소에 외국투자자의 설립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서류로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는 투자신고 후 외국투자자 명의로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주금납입 보관 목적의 임시계좌(별단계좌)에 외환의 임시계좌 투자자금을 송금 및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됨.
- 잔액증명서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가능한데 투자자 명의로 실명 외환계좌에 투자자금을 예치한 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이 잔액 증명서는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인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됨.

**Q 72 ▶ 외국인이 투자한 돈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A 72**

자금처리는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 국내은행에서 송금된 출자자금에 대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등기 등기 서류를 제출하여 자본등기를 완료하게 되며 이 때 국내 법인은 은행에 예치중인 주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즉시 사용가능하게 된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경우에는 자본등기가 완료된 후에 출금이 가능하지만, 잔액증명서의 경우에는 증명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목적으로 출금할 수 있다.)

The image features a solid yellow background. In the center, there is a large, white, stylized number '4'. The number is composed of a thick horizontal bar on the left that curves downwards and then meets a vertical bar on the right. The vertical bar has a white square cutout in its middle section. Surrounding the number are several sets of thin, white, wavy lines that flow across the page, creating a sense of motion and depth. The lines are most prominent in the upper and lower corners, curving around the central number.

# 부동산 취득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4 부동산 취득

### Q 73 외국투자가가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A 73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상이하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등’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시에 내국인 거래당사자와 마찬가지로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상속·경매·합병·계속보유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6개월 내에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함.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반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인출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부동산 임대사업 등)으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금을 반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함.
  - ㄷ) 국내법인이 외국인 지분이 1/2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경우 ‘외국인등’에 해당하게 되고 부동산의 ‘계속보유’를 위해 6개월 이내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함.
-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가 아니라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법」상 지사 설치 신고를 해야 하고 지점 등의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됨.

### 🏠 회사설립비용 사례(자본금 1억 원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구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부동산)	외국인투자 촉진법
취득 주체	• ‘외국인등’의 정의 - 외국국적 개인 - 외국법인 - 외국국적 개인이 사원 또는 구성원, 임원의 1/2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국적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지분의 1/2 이상 또는 의결권의 1/2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 비거주자	• 외국인투자기업 ㄷ) 국내법인이 외국인 지분이 1/2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경우 ‘외국인등’에 해당하게 됨

구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부동산)	외국인투자 촉진법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부동산취득신고)	외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자금을 반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신고 기관 및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소재지 시군구 지청과</li> <li>거래신고(모든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li> </ul> </li> <li>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제1항의 취득계약(중여 등) : 60일 이내 신고</li> <li>- 제2항의 취득(상속, 경매, 합병 등) : 6개월 이내 신고</li> <li>- 제3항의 계속보유(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등'으로 변경) : 6개월 이내 신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은행 본지점</li> <li>한국은행(국내발생자금일 경우)</li> <li>부동산 취득자금 인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은행 본지점, KOTRA</li> <li>투자자금 반입 이전</li> </ul>
주요 내용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관련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신고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 매각 등의 혜택에 관한 사항

## Q 74 ▶ 외국인으로서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계약체결 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 A 74

외국인 등\*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 ②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 제8조제1항에 의한 취득의 경우 60일 이내,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

- 다만, 신고만으로 취득 가능한 토지인지 사전허가를 요하는 토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외국인이 허가대상 토지를 사전에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징역형 내지는 벌금까지 납부하게 되어 토지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외국인의 취득 허가대상 토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에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2.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 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 구역
- 벌칙조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외국인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바. 외국 정부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 Q 75 ▶ 외국인이 한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75

그렇다.

- 외국인 등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증여 등)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동법 제3조제1항의 각호 부동산의 매매 계약 등은 신고 제외), 같은 법 제2항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취득 또는 계속보유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상속, 경매,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합병 등).
-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갖고 있는 내국인 혹은 내국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취득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1. 계약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제3항)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외국인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3.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외국인 등)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4.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외국인 등)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 Q 76 ▶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대금은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

#### A 76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함.
- 이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동 국내지사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없이 바로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면 됨 (「외국환거래규정」 제 9-34조).

### Q 77 ▶ 임원의 과반수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법인인 경우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 A 77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 국내 법인이라 하더라도 임원의 1/2 이상이 외국 국적 개인이거나 외국 국적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이 1/20 이상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등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대상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Q 78 ▶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국내 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A 7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는 하지 않는다.

- 이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주의하여야 할 점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예정인 외국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자금이나 장기차관을 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자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자금을 반입하여야 함.

**Q 79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A 79**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 일정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되어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가능함(「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1항)

**Q 80 ▶ 외국인투자기업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가?**

**A 80**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농업법인도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농업법인인 경우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2021)」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대상 허용기준으로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벼와 보리를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농업법인이면 그 소유가 제한될 수 있음.


-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를 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토지 지목이 전이나 답인 농지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전환하는 절차)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마쳤다면 일반법인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Q 81 ▶ 외국인이 한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 A 81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수입은 결산 완료 후 배당금 형태로 대외송금할 수 있다.

-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음.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아님.
- 또한 단순히 소유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개인, 외국법인)은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The image features a solid pink background. In the center, there is a large, stylized number '5'. The '5' is composed of a white shape with a light pink shadow or outline, giving it a 3D effect. The number is surrounded by several sets of thin, white, wavy lines that flow across the page,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The lines are most prominent in the upper and lower corners, curving around the central number.

5

# 조세 및 회계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5 조세 및 회계

### Q 82 ▶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 종류와 세율은?

#### A 82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 법인과 동일한 조세부담의무를 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세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이며, 세법에 정한 특정 사유 해당 시 추가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각 구간별 세율 적용
  - 2억 원 이하 :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1%
  - 3천억 원 초과 : 24%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각 구간별 세율 적용
  - 2억 원 이하 : 0.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1%
  - 3천억 원 초과 : 2.4%
-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세율 : 10% (수출하는 재화 0%)

### Q 83 ▶ 외국인투자기업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A 83

주권상장법인이나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 밖에 직접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다른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 ☞ 외부감사의 대상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판단 요건	자산	120억원 이상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100명 이상
	사원(주주)수	-	50명 이상
대상여부 (소형회사)	4개 요건 중 2개 충족 시 대상		5개 요건 중 3개 충족 시 대상
대형회사 추가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대상		

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5조

### Q 84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측면의 차이는 무엇인가?

#### A 84

단순히 세율측면에서 비교해볼 때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개인으로사업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구간을 제외하고 대략 현시점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적으므로, 순이익이 많고 이익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기에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급여, 퇴직금, 배당 등)이 제한적이고 각 단계에서 부과되는 소득세(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b>과세소득의 범위</b>	소득세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 (소득원천설)	당해사업년도에 증가된 순자산액 (순자산증가설)																												
<b>세율</b>	당해연도 소득	각 사업년도에 대한 사업소득 및 청산소득																												
<b>범위</b>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의 6퍼센트</td> </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td> </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td> <td>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td> </tr> <tr> <td>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과세표준의 9%</td> </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 <td>1천8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9%)</td> </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 <td>37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21%)</td> </tr> <tr> <td>3천억원 초과</td> <td>62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의 24%)</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의 24%)																													
		*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법인 지방 소득세가 별도부과 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됨																													
<b>대표자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금</b>	필요경비 불산입, 설정대상 아님	손금산입, 설정대상임																												
<b>가지급금 인정이자</b>	계산대상 아님 (단,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대여금)																												
<b>간주임대료 계산 대상</b>	모든 부동산임대업자	추계신고시에는 모든 법인이 대상이나 기장신고시에는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영리법인만 대상																												
<b>세율</b>	간단	다소 복잡, 등록세 비용 발생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범위	자유로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사항
이익의 회수	자유로움	급여, 퇴직금, 배당 등 제한적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 Q 85 ▶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이며 처리기한은?

#### A 85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기한은 2일이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 등의 사실 내용 확인에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하며,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Q 86 ▶ 한국의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 A 86

한국의 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이 아래의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2.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3.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4.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
5.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6.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다만, 6번째 방법은 위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Q 87 ▶ 이전가격(Transfer Price) 과세제도가 무엇인지?

#### A 87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 Q 88 ▶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상 차이는?

#### A 88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법인 성격의 차이로 인해 납세의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부담하는 세율이나 신고납부 절차에서는 차이가 없다.

-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은 국내 법인이므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함.
- 그러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 납세의무가 추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법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Q 89 ▶ 외국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되는 요건 및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는?

#### A 8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과 관계없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함. 또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함.

-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

## Q 90 ▶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변경) 중 손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의 한도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

### A 90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1) + (2) + (3)

(1)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기본한도(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 원 이하	총 수입금액 × 0.3%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	3천만 원 + (100억 초과금액 × 0.2%)
500억 원 초과	1억 1천만 원 + (500억 초과금액 × 0.03%)

(2)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 ①, ② )

- ① 문화접대비
- ② 위 '1)의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20%

(3)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 ①, ② )

- ① 전통시장 지출액
- ② 위 '1)의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10%

### • 접대비 증빙

- 1회 지출 접대비 중 3만 원을 초과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신용카드(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액은 적격증빙 미수령으로 봄) 매출전표 등이 적격증빙임.

현금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3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경조사비의 경우 1회 지출액 20만 원 한도에서 청첩장 등이 적격증빙이 됨.

### Q 91 ▶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상 차이는?

#### A 91

원칙적으로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신고·납부한다.

- ① 주식 양도가액 × 10%
- ② 주식 양도차익 (수입금액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 20%

다만,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 상 소득원천지국(한국)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비과세 된다.

### Q 92 ▶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는 제3자에게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나?

#### A 92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 불이행 시 사실상 국외 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 Q 93 ▶ 한국에 회의 목적으로 온 외국법인(외국사업자)이 국내에서 사업상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 A 93

국내에서 음식·숙박·용역·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曆年)의 환급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 음식·숙박용역
- 광고용역
- 전력·통신용역
- 부동산임대용역
-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함(상호주의).

### Q 94 ▶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 A 9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나뉘어짐\*.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인 것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나 그 수입용도의 내용에 불구하고 모두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5조

-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간접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화가 수입될 때 동 재화가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와 동일한 조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 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 Q 95 ▶ 수입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주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 A 95

수입하는 주류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 관련법에 의한 절차

- 1) 「주세법」: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로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 받을 것  
- 관할 기관: 국세청([www.nts.go.kr](http://www.nts.go.kr))
- 2)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 대한 식품 등 수입 신고를 필 하여야 하며 동 검역에 합격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 관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http://www.kfda.go.kr)), 국립검역소 ([nqs.cdc.go.kr](http://nqs.cdc.go.kr))
- 3)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류 용기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을 것  
- 관할기관: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http://www.keco.or.kr))

#### • 수입통관절차

- 상기 요건을 충족한 물품이 도착되면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 등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침.

#### • 수입 시 세금의 종류와 세액산출 방법

- 예를 들어 보드카(HSK2208.60-0000)의 경우, 관세율(FTA협정세율 확인), 주세율 72%, 부가가치세 10% 가 부과되며 세액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율(FTA협정세율 확인)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율(72%)
  - 교육세 = 주세액의 30%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Q 96 ▶ 과소자본세제란?

### A 96

기업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자본을 불입하는 대신 차입금의 규모를 늘려 이자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회사의 비용을 늘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임.

• **과소자본세제**

-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국외 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1)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 Q 97 ▶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우대 내용은?

### A 97

외국인도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에 따른 누진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감면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며 감면 대상 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임.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순수 내국기업 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됨.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 소득에 100분의 19(단일세율)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음.

## Q 98 ▶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 소득세 우대내용은?

### A 98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10년(2023.11.1.이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 외국인기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불 이상)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 기술자
    -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 ②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③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
    - ④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행정사무만을 담당하는 자는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 Q 99 ▶ 외국인투자자로 인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받았지만 추후 해당 감면받은 조세가 추징되는 사유는?

### A 99

개괄적인 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1.1.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폐지되었지만 이전에 감면 받은 법인세가 있는 경우 추징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 외국투자자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Q 100 ▶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수입 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 A 100

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의 할 것은 기산일이 조세감면 결정일 또는 사업 개시일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국인투자신고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휴양업 등과 같이 인허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외국인투자신고일은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

### Q 101 ▶ 도지사에 의해 지정·고시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도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 A 10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도 별도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 신청)
  - 조세감면신청서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지자체의 지정고시 등)
  - 사업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서 등)
  -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함을 증명하는 자료

### Q 102 ▶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방법은?

#### A 102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이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후 여기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총과세표준) × 감면비율
  -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100%, 50%)

**Q 103**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10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 다만,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된 소득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Q 104**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 4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104**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기업의 총 주식 또는 총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text{공제세액} = \text{공제할 투자세액} \times \frac{\text{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text{당해 기업의 총투자 또는 총지분}}$$

**Q 105**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만약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A 105**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Q 106** ▶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A 106**

등록세는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2011.1.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로 통합되어 감면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감면받는 것이지만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을 감면받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등록세라는 세금을 언급하는 자체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Q 107** ▶ 2019.1.1. 이후에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지방세와 관세 등(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은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니 지방세도 2020.1.1. 부터는 감면이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지방세도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인가?

**A 107**

2020.1.1. 이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을 신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변경된 것이다.

**Q 108** ▶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A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조례에 의하여 최대 25%를 추가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지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Q 109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외국인투자에 기초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 받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A 109**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 지방세 감면 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감면 대상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 산업단지 등에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감면내용

- 취득세

구분		개인사업자			감면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	합계(최대)	
건축물 등	신축 증축	50	25	75	'25.12.31.까지
	대수선	25	25	25	

\*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8항

- 재산세
  - 감면기간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 감면비율 : 수도권 35%, 비수도권 75%

## Q 110 ▶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A 110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순수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대상기업(외투기업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의 범위” 참조

\*\*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봄. 일단 서울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를 요함.

- 창업의 정의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① 취득세
      - 감면 대상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기간 및 감면 비율 : 감면기준일로 부터 4년간 100분의 75
      - 감면기준일 : 법인 설립등기일
    - ② 재산세
      - 감면 대상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공장 입지기준면적(「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이내의 부분만 해당
      -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 : 창업일부터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 Q 111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도 감면 대상 지방세인가?

#### A 111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 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만 감면 가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 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을 수 없음.

### Q 112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인 경우 급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본국에서도 또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 A 112

각국의 조세제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본국에서도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 다만, 각국은 통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국(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음.

### Q 113 ▶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경우는?

#### A 113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수행지국에서 비과세 된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연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Q 114 ▶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국내 파견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A 114**

조세조약 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 또한 질문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정 요건(183일 미만 단기 체재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The image features a large, stylized number '6' centered on a solid orange background. The number is rendered in a light cream color with a subtle gradient. It is surrounded by several sets of thin, parallel, wavy lines in a slightly darker shade of orange, which create a sense of motion and depth. The lines are arranged in three main groups: one set above the number, one set to the right, and one set below. The overall composition is clean and modern.

6

# 입지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6 입지

### Q 115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할 때 입주 계약 시점까지 투자 금액이 전부 투자 완료되어야 하는지?

#### A 115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 투자금액은 입주 계약 시점에 모두 도착해 있을 필요는 없다.

-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면 입주 계약이 가능함.
-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은 입주 계약시점으로부터 입주조건 이행기간인 5년 내에 최저 투자금액이 전부 도착해야 함.

### Q 116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및 입주자격, 입주혜택은?

#### A 1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전국에 30곳이 있다. ('24년 3월 기준)

연번	단지명	최초지정일	지정면적(천㎡)	관리기관
1	장안(경기)	2004-09-30	418.2	경기도시공사 외투센터
2	당동(경기)	2005-09-12	239.4	
3	장안2(경기)	2006-12-29	369.0	
4	오성(경기)	2009-09-03	353.9	
5	오창(충북)	2002-11-06	495.3	산단공 충북지사
6	진천산수(충북)	2014-08-20	108.4	
7	충주(충북)	2016-07-18	334.7	
8	음성성본(충북)	2021-07-08	165.3	산단공 충청본부
9	천안(충남)	1994-10-13	492.5	
10	인주(충남)	2004-12-21	164.8	
11	천안5(충남)	2012-12-21	336.6	
12	아산탕정(충남)	2021-09-10	85.3	산단공 당진지사
13	송산2(충남)	2015-10-12	134.0	
14	송산2-1(충남)	2017-01-31	165.3	

연번	단지명	최초지정일	지정면적(천㎡)	관리기관
15	송산2-2(충남)	2013-05-15	117.9	산단공 당진지사
16	월전(광주)	2009-09-03	99.1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17	국가식품(전북)	2015-10-12	116.0	산단공 익산지사
18	대불(전남)	1998-08-29	1,163.5	산단공 대불지사
19	달성(대구)	2008-09-10	104.2	산단공 달성사무소
20	구미(경북)	2002-11-06	332.4	산단공 대구경북본부
21	구미부품(경북)	2009-03-09	246.3	
22	사천(경남)	2001-08-17	495.9	산단공 사천지사
23	문막(강원)	2013-12-10	84.1	산단공 강원본부
24	익산부품(전북)	2010-03-12	169.8	익산시
25	대전국제(대전)	2020-09-16	83.6	대전광역시
26	포항부품(경북)	2009-09-03	264.9	포항시
27	광양세풍(전남)	2017-11-02	82.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8	지사(부산)	2005-11-30	298.1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
29	미음부품(부산)	2011-11-28	299.6	
30	창원부품(경남)	2010-10-14	71.3	

- 단지형 외투자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입주할 수 있음. 입주한도(최저 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입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부지가액의 1배 이상을 투자(FDI)해야 하며, 업종별 최소면적 기준을 이상의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포함)을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감면율	사업구분	조건		비고
		최초지정일	최초지정일	
0%	익산부품(전북)	정상임대료(취득가액의 1%)		-
75%	제조업	500만\$ 이상	-	-
		250만\$ 이상	70~150명 미만	-
90%	제조업	250만\$ 이상	150~200명 미만	-
		500만\$ 이상	-	소재부품단지
100%	제조업	250만\$ 이상	200명 이상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100만\$ 이상	-	-

### Q 117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분양 및 임대 한도가 있는지?

#### A 117

기업의 필요 이상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공장건축면적의 규모에 적합한 공장용지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과 최저 투자금액으로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지역은 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해 기준공장면적률로 부지임대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 면적으로 함(기준공장면적률이 12%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음.

### Q 118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 A 118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 계약시 작성한 사업계획을 입주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은 입주계약 해지 대상이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은 사업계획 대비 초과된 면적분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부지가 액의 5%)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투자금이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임대면적에 대해서 입주시점부터의 미이행 임대료를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음(미이행 비율로 계산하여 부과).

**Q 119 ▶ 공장설립 절차는?****A 119**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의 입지)는 계획입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로 투자자가 직접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공장건축·제조시설 설치, 공장등록·공장가동 등의 순서로 공장설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의 경우에만 시·군·구의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하며, 500㎡ 미만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Q 120 ▶ 모든 공장이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A 120**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 미만의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이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500㎡ 미만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과 동시에 처리되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500㎡ 미만의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승인이 아니라 신설승인 대상임.
- 다음의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이 필요치 않음.
  -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영위자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유무역지역 입주, 창업사업계획승인,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

**Q 121 ▶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타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현황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A 121**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http://www.industryland.or.kr)), 팩토리온([www.factoryon.go.kr](http://www.factory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http://www.industryland.or.kr))' 홈페이지에서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 등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 가능

### Q 122 ▶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지?

#### A 122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에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먼저 확인한 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면 부지소유주로부터 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부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Q 123 ▶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장건축 허가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 A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의제처리(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 되므로 공장 설립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공장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승인 등 일괄 처리민원의 경우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 Q 124 ▶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설립은?

#### A 124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설립 총량규제뿐만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등 권역별로 구분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제한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참고 : 수도권의 공장입지 제한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분	권역의 지정	행위제한
과밀억제 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지역의 지정</li> <li>•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의 지정 가능</li> </ul>
성장관리 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li> </ul>
자연보전 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li> </ul>

※ 행위제한 완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별표1의2, 별표2, 별표3

## Q 125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등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 A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장 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권 양수도 전에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해야 함.
- 이 경우 양도가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용지(토지) : 취득가액+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유지비용을 합산
  - 공장(건물) :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산출

**Q 126 ▶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을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절차는?**

**A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일 1년 이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Q 127 ▶ 기준공장면적률이 적용되어 건축 및 등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해야 하나?**

**A 127**

기준공장면적률제도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공장설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공장건축 및 공장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공장면적률 이상으로 건축면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Q 128 ▶ 국내에는 공장이 없고 외국에 현지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지?**

**A 128**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설립되어 있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공부(공장등록대장)에 등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내에 대상물인 공장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이 불가능하다.

**Q 129 ▶ 공장의 확장과 부대시설의 보완 등으로 공장이 여러 개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장등록 방법은?**

**A 129**

공장부지가 여러 개의 지번으로 구성된 경우에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로 공장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접되어 있지 않은 공장은 개별적으로 입주 계약 및 공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Q 130 ▶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는지?

#### A 1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각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매입하여 기업체에 임대용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Q 131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입지제도의 유형 및 각각의 특징은?

#### A 131

외국투자자에 대한 입지지원 제도는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며, 임대료 감면, 지방세 및 관세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외국인투자지역은 개별형, 단지형,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함.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형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규모의 첨단산업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으로 2004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현재(2024년 3월 기준) 전국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76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30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3개가 운영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은 그 규모가 기초 지자체 이상의 규모이며, 지자체의 행정권한을 관리청에 위임하여 자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교 및 병원설치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 위주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과 구분됨.
-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더불어 1970년에 최초로 도입된 특구제도로 관세 유보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해외에서의 원자재 도입과 제품수출에 세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무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당초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물류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음.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의 유형으로 분류됨.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입주 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임대제공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 목적으로 도입되어 비관세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Q 132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토지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 A 132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받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
  - 소재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장비를 생산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또는 제4호의 시설을 운영하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인 고용하는 사업(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은 100분의 90, 70명 이상은 100분의 75 임대료 감면)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

\* 이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지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하는 조례에 의거하여 토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Q 133** ▶ 외국인투자 합작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외국 투자자의 투자 없이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증자를 하게 되어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입주 자격 미준수로 인한 현실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A 133**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이전에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입주자격 미준수로 인한 현실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단 유예기간 동안의 미이행비용에 대한 현실임대료(토지 취득가액의 5%) 납부가 필요하다.)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사업계획 이행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계속 적용함.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율 10% 이상은 계속 유지하여야 함.

**Q 134**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은 얼마인가?

**A 134**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이 되는 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금액 및 기준공장면적률(건축면적)로 판단한다.

**Q 135 ▶ 장기차관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입주한도를 충족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계속하여 입주가 가능한가? 또한 임대료 감면이 가능 한가?**

**A 13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장기차관의 만기 상환은 가능하나,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사업계획 대비 입주한도가 미달할 경우에는 입주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현실임대료 (토지 취득가액의 5%)의 적용을 받는다.

**Q 136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후 입주기업은 언제까지 사업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A 136**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 인원) 이행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참고로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 기간은 5년이다.

**Q 137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 137**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 지원 혜택은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 감면 대상을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제2의5호에서 개별형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은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Q 138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부지를 임대 받는 기업도 현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A 138**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등 임대 부지를 제공받는 기업도 현금지원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현금지원 계약 기간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으로 감면받은 임대료를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시키게 되어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제10조

**Q 139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A 139**

제한이 있다. 다만, 특별한 수준의 제한이 아닌 일반적인 산업단지 수준의 입주업종 제한이다.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대상업종은 다음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 업종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별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 「국가과학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 따라서 입주하고자 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기본계획에서 어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주 계약 신청을 해야 함.

**Q 140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국 투자가 A가 미화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AK를 설립하고 일본 투자가 J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화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JK를 설립하는 경우 AK 및 JK 사업부지를 묶어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A 140**

가능하다. 제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아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에 의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그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사업별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일 것

- 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 업종이나 사업에 해당할 것
- 시설을 서로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Q 141** ▶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내부의 생산설비를 모두 해체하고 새로운 제조설비를 기존공장 건물 내에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인정받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금액은 5천만 달러이고 업종은 제조업)

**A 141**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 지침」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새로이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Q 142** ▶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순수 국내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가?

**A 142**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내 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가능하다.

-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인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 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력업체의 입주허용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은 국내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주할 수 있음. 입주대상업종은 「외국인투자유영지침」 제11조를 준용하고, 입주우선 순위는 지침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함.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국내복귀투자 금액”으로 볼 수 있음.

**Q 143**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데 당초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미화 1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았으나 이후 사정이 생겨 투자금 액을 미화 5천만 달러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A 143**

외국인투자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이므로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과 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된 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변경 고시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변경고시 내용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solid reddish-pink color. It features several sets of thin, white, wavy lines that flow across the page,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These lines are most prominent in the lower half of the image.

**노무**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7

## 노무

### Q 144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란?

#### A 144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 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즉 노동강도의 차이, 노동의 질 차이, 권한과 책임의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됨. 해당 제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Q 145 ▶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휴일·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하는지?

#### A 145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통상근로자보다 뚜렷이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근로시간의 장단에 대한 별도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제55조) 및 연차유급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 Q 146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는?

### A 146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같은 법률 제4조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 “헌법에 의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즉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노사 간 협의나 의결 활동을 함. 이와 달리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며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활동 등을 함. 특히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등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음.

구분	노사협의	단체교섭
근거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목적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대표성	전체 근로자를 대표	조합원을 대표
당사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
활동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의결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여부	쟁의행위 불가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 Q 147 ▶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A 1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제12조 제1항에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노사협의회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임을 꺼려하는 등 노사협의회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는 사내 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

### Q 148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 A 148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제22조(보고사항 등)에 규정되어 있다.

### 🏠 노사협의회 의제

#### 협의 사항(제20조)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 상 또는 기술 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주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액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의결 사항(제21조)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보고 사항(제22조)

#### 보고 사항(제22조)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Q 149 ▶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계약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나?

#### A 149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는 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퇴직 : 임의퇴직, 정년퇴직 등), ② 근로자의 동의 없이 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해고 :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경우(자동소멸 : 계약기간 만료, 사업완료, 근로자의 사망, 기업소멸 등)로 나눌 수 있다.

- 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만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예고통보의 의무는 없음. 다만,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알리는 차원에서 사전에 고지를 하는게 당사자간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 Q 150 ▶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 가능한지?

#### A 150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함.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Q 151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가산임금은?

#### A 15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 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 Q 152 ▶ 일반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적용해야 하나?

### A 152

휴일은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강제되느냐에 따라서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나눌 수 있다. 법정 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등이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명절, 국경일 등의 휴일로 기존에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약정 휴일로 규정하여 사용해 왔다.

- 2018.3.20.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됨.

<p><b>공휴일</b></p>	<p>①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② 1월1일, ③ 설추석 연휴 3일, ④ 부처님오신날, ⑤ 어린이날, 15일 ⑥ 현충일, ⑦ 기독교탄신일</p> <hr/> <p>-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p>
<p><b>대체공휴일</b></p>	<p>다음의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p> <p>-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기독교탄신일 :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p> <p>- 설추석 연휴 3일 :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p> <p>-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어린이날/설추석 연휴 3일/부처님오신날/기독교탄신일 : 토요일, 일요일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p> <p>※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p>

### Q 153 ▶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사내 이메일로 할 수 있는지?

#### A 153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 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인정되기 어려움.
  - 단, 예외적으로 회사 내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통보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해당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 적법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
- ※ 휴가사용 촉진조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Q 154 ▶ 해고예고 통보 시 법정 해고예고 기간인 30일에서 5일이 부족할 경우, 5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A 154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해고예고 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으며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며 역일로 계산하여 법정 해고 예고 기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전체 법정기간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기 68207-1346)

-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 \* 해고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 \*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며,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 Q 155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퇴직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 A 155

퇴직(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퇴직절차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미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 민법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 수리)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사표를 수리한 때에 발생함.
- 근로자의 사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퇴직효과의 발생시점이 다름. 임금이 월급제 등 기간급인 경우, 사표를 제출한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 후의 1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함. 임금이 기간급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함.

## Q 156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 A 15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다음과 같음.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5 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중간정산에 맞는 특수한 요건도 갖추어야 함.
    - ①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과가 없음.
    - ② 사용자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함.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는 중간정산 시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이나 경력증명 기타 내부승진 등 인사관리에서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으로 단절되지 않는다.

### Q 157 ▶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 A 157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이는 징계 목적, 사업의 성격,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위계질서문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에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근무태도불량은 주로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근무태도 및 성적불량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나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 참가의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Q 158 ▶ 직무에 적합한 직원의 채용과 그렇지 못한 직원의 해고가 어려운 바 직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가?

#### A 158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어 자질검증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 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 1호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음.

**Q 159 ▶ 최저임금 산정 시 209시간의 근거는 어떻게 산정 되었는가?**

**A 159**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1년의 월 평균 주간은  $4,345\text{주}(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이며 1일 8시간 근무와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함. 따라서 월 평균 주간에 주 48시간을 곱하면 208.56 이 계산되며 즉 월 209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으로 하여 시간 당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음. ( $4,345 \times 48 = 208.56$ )

**Q 160 ▶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 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

**A 160**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 간의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간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 해석이 변경됨.
- ※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의 해석을 유지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하도록 함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 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1주 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하루 초과분을 고려하지 않고, 1주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2 판결)

**Q 161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여야 하는가?****A 16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다.

**Q 162 ▶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A 16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대표이사 등은 피보험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명칭이 전무이사, 부사장 등이더라도 실질적 업무 집행권이 없고 회사 경영의 책임이 없이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Q 163 ▶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가능한 경우는?****A 163**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가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①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②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③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필수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국가별, 체류자격별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예시 : 국민연금 당연 적용 제외되는 체류자격의 종류**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 종합(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경우

**Q 164 ▶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D-8 비자 소지자) 인데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A 164**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사용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격 상실신고서에 다음 서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①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②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등 실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야 한다.

## Q 165 ▶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A 165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http://www.nps.or.kr))의 외국인에 대한 급여 참고).

-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2024.4월 기준/23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2011.11.1.), 튀르키예(구 터키)(2015.6.1.), 스위스(2015.6.1.), 브라질(2015.11.1.),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 ※ 기타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25개국)이 있으며 최소가입기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아님
  - ※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하다.

## Q 166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 A 166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사망, 정년, 징계해고, 기업의 소멸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Q 167** ▶ 새롭게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가?

#### **A 167**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국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7(특정 활동) 비자 발급 시에는 한국인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비자 관련 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Q 168** ▶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A 168**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게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앞의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용자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① 판매부진과 자금난, ② 원자재 부족, ③ 공장 이전, ④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의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음.

**Q 169 ▶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나 비교 자료 등이 있는지?****A 169**

임금 관련 자료는 기업 내부의 민감한 자료에 해당되며 외부에 공개된 외투기업의 직원 등에 대한 임금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컨설팅이나 헤드헌팅 업체의 경우에서 기업 간의 임금 비교 자료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el.go.kr](http://laborstat.moel.go.kr))의 임금근로시간 부분에서 한국의 산업·규모별 임금, 고용형태별 임금, 직종·산업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환경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8 환경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등 아래의 환경분야 FAQ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누리집에 게재(매년 초 최신화)된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정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Q 170 ▶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환경관련 법령은?

#### A 170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향후 공장 내에 설치하려는 제조시설 등이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관계 법령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배출시설 : 소음·진동관리법
  -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 Q 171 ▶ 통합환경허가란 무엇이며, 그 대상과 허가절차는?

#### A 171

통합환경허가란 대기, 폐수, 폐기물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매체 별로 인허가, 관리하던 것을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환경허가로 종합하여 배출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제도로써,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인 최적가용기법(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 🏠 통합환경관리 대상

- \* 통합환경관리 대상은 발전업, 석유화학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22개 업종(시행령 별표1)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이거나, 1일 폐수배출량 700m<sup>3</sup> 이상 배출하는 1종과 2종 사업장이 해당된다. 기본절차는 ①통합허가신청 → ②통합허가 검토 및 허가결정 → ③허가사항 확인 → ④사후관리로 구성
- \* 통합허가 신청 전, 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사전협의” 신청 가능
- \* 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허가(신고) 및 그 관리는 지자체 장이 담당하나, 통합 환경허가는 환경부장관이 허가하고 관할 환경청장이 사후관리하고 있음
- \* (허가신청 ~ 허가검토-결정 ~ 사후관리의 허가관리 전(全)과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ieps.nier.go.kr](http://ieps.nier.go.kr))으로 온라인 처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관련 법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허가신청 등 접수 :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

## Q 172 ▶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환경법령은?

### A 172

(온실가스 관리업체) 최근 3년간 연평균 1.5만톤(CO<sub>2</sub>-eq)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연평균 5만톤(CO<sub>2</sub>-eq)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정부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매년 감축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최근 3년간 연평균 2.5만톤(CO<sub>2</sub>-eq)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연평균 12.5만톤(CO<sub>2</sub>-eq)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서 관리업체 등에 해당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됨. 배출권거래제는 5년 마다 국가 부문·업종·연도별 감축목표 등과 연계되어 업체별로 배출허용총량을 연간 단위로 할당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산정(measuring)-검증(verification)-보고(report)-인증(certification)하며, 업체별 부족분 및 잉여분을 시장 거래할 수 있도록 함.

우리나라는 2012년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환, 수송, 산업, 폐기물, 건물, 공공기타 부문에 속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되어 배출권을 할당받는다. 즉, 일정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나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들은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는다. 배출권거래제는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이렇게 할당과 관리의 단위가 되는 5년의 기간을 '계획기간'이라고 한다. 매 계획기간 시작 전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데,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이 수립되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과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진다. 매 계획기간의 시작 전 할당대상업체가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면,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에 계획기간의 총배출권을 할당한다.

※ 현재는 3차 계획기간(2021 ~ 2025년)임

계획기간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1년 단위의 기간인 이행연도로 구성된다. 할당대상 업체는 매 이행연도 말에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양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배출량 명세서'이다. 업체가 검증업체의 검증을 받아 검증보고서와 함께 명세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업체의 배출량을 재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배출량을 인증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하게 되고, 업체는 최종적으로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조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8)

• 온실가스 배출 관계 법령

- 온실가스 관리업체 :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등.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중립기본법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인증 및 보고에 관한 지침 등.

### Q 173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취급하는 기업이 등록, 신고 관련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A 173

[화학물질 등록] 연간 1톤이상 신규 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유예기간 동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으며, 등록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화학물질/중점관리물질 신고]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관할지역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허가신청 등 접수 : “화관법 민원24”(http://icis.me.go.kr/cdms)

### Q 174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A 174

사고대비물질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수입, 제조,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등)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관할 환경청의 영업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하려는 기업은 화학물질확인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통적으로 모든 취급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15분 내에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인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상별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고사훈령 등을 참조해야 한다.

**Q 175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신고, 승인 대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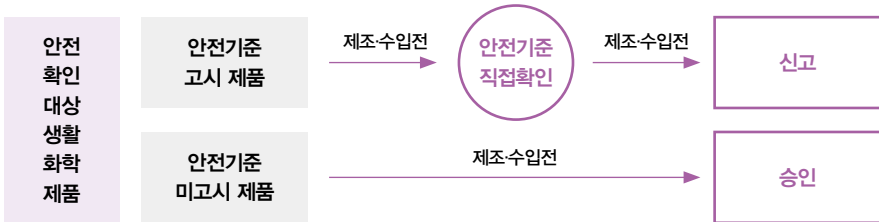
**A 17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하며 세정제, 방향제, 합성세제, 탈취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시험·검사 기관의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은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 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화학물질 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 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1]

분류	품목
세정제품	① 세정제 ② 제거제
세탁제품	① 세탁세제 ② 표백제 ③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① 광택 코팅제 ② 특수목적코팅제 ③ 녹 방지제 ④ 윤활제 ⑤ 다림질 보조제 ⑥ 마감제 ⑦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① 접착제 ② 접합제 ③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① 방향제 ②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① 물체 염색제 ② 물체 도색제

분류	품목
자동차 전용제품	① 자동차용 워셔액 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제품	① 인쇄용 잉크·토너 ② 인주 ③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① 미용 접착제 ②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①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① 살균제 ② 살조제 ③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④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① 기피제 ② 보건용 살충제 ③ 보건용 기피제 ④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⑤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① 목재용 보존제 ②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① 초 ② 습기제거제 ③ 인공 눈 스프레이 ④ 공연용 포그액 ⑤ 가습기용 생활 화학제품 ⑥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현재 적용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종류에 대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http://law.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Q 176 ▶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의 종류와 확인, 승인 기준은?

### A 176

살생물제는 유해생물의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인 '살생물 물질'과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인 '살생물 제품' 및 항균처리 필터 등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인 '살생물 처리제품'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살생물 물질(예시) :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등

※ 살생물 제품(예시)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유형 분류 아래 참조)

살생물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 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화학물질 안전원에 살생물 물질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 판매, 유통시키기 위하여 살생물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화학물질안전원에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을 받은 후 제조·수입·유통할 수 있다.

[관련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 유형 분류(화학제품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

분류	품목
살균제류(소독제류)	① 살균제 ② 살조제
구제제류	③ 살서제 ④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⑤ 살충제 ⑥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⑦ 기피제
보존제류(방부제류)	⑧ 제품보존용 보존제 ⑨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⑩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⑪ 목재용 보존제 ⑫ 건축자재용 보존제 ⑬ 재료·장비용 보존제 ⑭ 사체·박제용 보존제
기타	⑮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현재 적용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종류에 대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http://law.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Q 177 ▶ 국가 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및 재활용 등을 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A 177**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 따라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중간처분과정을 거치는 경우라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아울러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 통제 대상 폐기물 여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참조
- 관련 법령 : 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환경부 고시)

## Q 178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그 절차는?

A 178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되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음.
  - ※ 정책계획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 ※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마련하여 실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
- 전략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

    - ※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에서는 해당 계획의 승인 전에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
  - ② 협의내용의 통보 및 이행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
  - ③ 통보받은 협의내용의 이행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
- 관련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Q 179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그 절차는?

#### A 179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 (참조) 전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환경보전이 필요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에는 도시의 개발 등 17개 분야 8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음.

- ※ (참조) 소규모영향평가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해야 함.

- ②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 승인 등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③ 협의내용의 통보 및 이행

- 환경부 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나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 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④ 통보받은 협의내용의 이행 및 통보

- 승인기관장 등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반영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Q 180** ▶ 외국인이 대표자인 국내 소재 기업이 환경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책자금 또는 기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180**

지원 요건에 합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환경부에서는 재원을 확보하여 기업의 녹색전환 및 친환경설비투자, 환경산업체 육성과 관련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 등 기후·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 정책자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환경정책' 참고

**Q 181**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환경전문공사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A 181**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의 환경전문공사업 외에도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환경영향평가대행업, 환경컨설팅, 측정대행업, 대기/수질 측정기기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2021년 신설)과 통합허가대행업(2021년 신설) 등 환경분야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A large, stylized white number '9' is centered on a purple background. The number is composed of a white outline with a solid white fill. The background features several sets of thin, white, wavy lines that create a sense of motion and depth, curving around the central number.

9

# 비자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9 비자

## Q 182 ▶ 비자(사증)의 종류 및 구분은?

A 182

### 1. 사증의 종류

#### • 단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이상 입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입국이 가능함.
  -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되는 복수사증은 3년 이내
  -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복수사증은 협정 상의 기간
  - 기타사증들은 통상 1년의 유효기간이 많음.

### 2. 단기체류 및 장기체류 사증 구분

#### • 단기체류 사증

- 단기간 체류(90일 이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단기사증 : 일시취재(C-1)사증, 단기 방문(C-3)사증, 단기취업(C-4)사증

#### • 장기체류 사증

- 외교, 공무, 협정수행자 (SOFA해당자)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사증 : 외교(A-1)사증, 공무(A-2)사증, 협정(A-3)사증
- 취업활동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체류자격 E계열 사증) : 교수(E-1)사증, 회화지도(E-2)사증, 연구(E-3)사증, 기술지도(E-4)사증, 전문직업(E-5)사증, 예술흥행(E-6)사증, 특정 활동(E-7)사증, 계절근로(E-8)사증, 비전문취업(E-9)사증,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사증, 방문취업(H-2)사증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자격은 업종에 관련없이 취업가능

- 기타 실무상 일반사증 : 문화예술(D-1)사증, 유학(D-2)사증, 산업연수(D-3)사증, 일반연수(D-4)사증, 취재(D-5)사증, 종교(D-6)사증, 주재(D-7)사증, 기업투자(D-8)사증, 무역경영

(D-9)사증, 방문동거(F-1)사증, 거주(F-2) 사증, 동반(F-3)사증, 재외동포(F-4)사증, 영주(F-5)사증, 기타(G-1)사증

\*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또는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참조

### Q 183 ▶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란?

#### A 183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발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도 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외국인과 국내에 있는 초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초청인은 발급번호 및 내용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송부하고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을 할 때 그 내용과 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 Q 184 ▶ 체류자격이란?

#### A 184

-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관한 기본제도로써 체류자격제도를 두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종류를 유형화한 것임.
- 일정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 허가받은 기간 동안은 국내 체류를 보장하는 반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 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화-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 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Q 185 ▶ 관광통과(체류자격 : B-2, 30일 또는 3개월) 사증으로 입국했을 시 체류기간 계산시점과 만료일은?**

**A 185**

체류기간 계산 시 입국일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국한 다음 날부터 체류기간이 산정되고 체류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하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월요일)을 만료일로 한다.

- 예를 들면, 관광통과(B-2, 30일) 사증으로 2023.3.31.에 입국하였다면 그 다음날인 4.1.부터 계산하여 체류만료일이 4.30.이어야하는데 4.30.이 공휴일이라면 체류만료일은 그 다음날인 5.1.이 됨.
- 한편 관광통과(B-2, 3개월)로 2023.3.31.에 입국하였다면 체류만료일을 '월'수로 계산하여 체류만료일이 2023.6.30.이 되며, 만약 만료일이 공휴일이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이 체류만료일이 됨. 이는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 및 주, 월, 년의 '역순 계산'에 따르기 때문임.

## Q 186 ▶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FISC) 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체류 허가업무는 무엇인가?

### A 186

외국투자자의 원활한 국내 기업활동을 위하여 종합행정지원센터(FISC)에서는 기업투자(D-8) 자격 해당자에게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 중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및 체류에 관해서는 외국투자자가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 필요서류 및 심사 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당일접수 및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 종합행정지원센터(FISC)의 비자 및 체류업무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재교부), 재입국허가업무,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열람포함) 등

- 종합행정지원센터(FISC)에서는 기업투자(D-8)자격자의 동반(F-3)가족에 대해서도 외국인 등록, D-8자격변경 예정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동반가족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업무 등 체류관련 제반업무와 외국인등록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음.

## Q 187 ▶ 기업투자(D-8) 사증 발급 대상자의 범위는?

### A 187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 또는 산업 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게 발급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업투자(D-8)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모기업 뿐만 아니라 관계회사의 직원들도 파견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행이 원칙이고 반드시 파견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필수전문인력은 경영·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기술자이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신청기관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Q 188** ▶ 외국인등록 대상자 및 외국인등록 시 첨부서류는?**A 188**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듯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의 거주 및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체류외국인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임.

**〈외국인등록 대상자〉**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재(장기)사증 소지자
-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될 경우,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해당자는 외국인등록 면제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즉시)
  - ※ 위 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이 됨.

**〈첨부서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 참고

참고로 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http://www.investkorea.org)) 메뉴 투자가이드-투자절차-서식 자료 No.29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및 비자신청서류”에 기업투자(D-8) 및 동반가족(F-3)의 관련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방문 시 필요한 외국인등록 구비서류 게재

**〈수수료〉**

- 자격변경허가 10만 원, 등록증발급수수료 3만 5천원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는 면제]
  - ※ 해외에서 기업투자(D-8)사증을 취득하고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체류자격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Q 189 ▶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A 189

대한민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절차를 모두 마친 후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투자절차 완료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로 외국인투자자가 한화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투자(D-8) 사증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이 단독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무역경영(D-9) 사증의 경우 투자 금액은 한화 3억원 이상 이어야 함

### Q 190 ▶ 기업투자(D-8)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 설립이 아닌 경우 개인기업 투자도 D-8 자격을 받을 수 있나?

#### A 190

기업투자(D-8)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법인 설립 포함) 하여야 하며,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제9조의3)」는 100분의 50 이상, 「연구개발시설(제16조)」는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함.

- 단 개인사업자가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과 공동경영을 할 경우에도 인정이 되며(D-8-3, 사업자등록증상 국민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함),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함.
- 만약 외국인 개인이 단독으로 3억 원 이상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였을 시에는 무역경영(D-9)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Q 191** ▶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유효기간 1년의 단수사증을 소지했고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A 191**

장기사증 소지자가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단수사증이란 1회 입국으로 그 효과가 만료되는 사증으로 체류기간이 1년인 기업투자(D-8)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였다 해도 외국인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인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 등록외국인의 재입국허가 관련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문의

※ 사증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 유효기간 : 3개월, 1년 등 사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으며 기산은 사증 발급일로 부터이고 단수사증(single)은 1회 출입국으로, 복수사증(multiple)은 기간 내 횟수 제한없이 출입국할 수 있음.
- 체류기간 : 30일, 90일, 1년 등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으며 체류 기간의 계산은 일수의 경우 입국한 그 다음날부터 시작이고 월, 년은 역순(개월,년)으로 계산함.

**Q 192** ▶ 단기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기업투자(D-8) 사증을 재외 공관에서 발급받기 위해 출국해야 하는지?

**A 192**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기업투자(D-8) 사증으로 자격변경을 하려면 입국일로부터 3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는 Q196번을 참조 바람

- 단,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 취업(E-10), 기타

(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 등은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불가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문의하기 바람

**Q 193** ▶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기업 투자(D-8)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

**A 193**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D-8 비자 발급 대상자가 아니다.

**Q 194** ▶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A 194**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내에서 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다. 여기에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 및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자,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본사의 제3국 현지법인 및 지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해당된다.

※ 기업투자(D-8) 체류자격변경 신청 필요서류 (Q196번 답변 참조 바람.)

- 통합신청서, 여권,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등이다.

\*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제출 서류는 가감할 수 있다.

## Q 195 ▶ 기업투자(D-8)사증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는?

### A 195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공통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 주식변동사항 명세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외국인등록 시기〉

- 현금출자의 경우
  - 외화반출 허가서 또는 신고서(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투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수입신고필증 사본

#### 〈기타서류〉

-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 시 제출)
- ※ 재외공관의 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Q 196 ▶ 본사 또는 해외 지사에서 파견되는 파견자의 기업투자 (D-8)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는?

### A 196

####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서류

##### 〈법인사업자〉

###### ①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사진1매(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서 발급된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도 허용하며 본사와 해외지사와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필수 전문인력 입증 서류 : 학위증,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등
-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②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사진1매(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 외국환매입증명서
- 외화 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 외국환 신고필증 (휴대 반입한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 반출 허가(신고서)
- 영업실적증명서류
  -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외화타발송금 계좌조회, 법인통장거래내역)
- 4대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심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체류기간연장(Extension)

#### 〈법인사업자〉

##### ①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서 발급된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도 허용하며 본사와 해외 지사와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납세사실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 체류지 입증서류

\* 심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 개인납세사실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영업실적증명서류
  -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외화타발송금, 법인통장 거래내역)
- 세금계산서
- 한국인 고용실적 증명서류 (4대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

\* 심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Q 197** ▶ 기업투자(D-8)과 동반(F-3)의 비자가 2023년 5월에 만료 예정이다. 그런데 D-8 자격자가 2023년 1월에 본국으로 귀임할 예정이고 자녀(중학생, 고등학생)와 아내는 학교 문제로 2023년 6월까지 남아있으려고 한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하나?

**A 197**

가족 중 주체류자격인 D-8 체류자가 국내활동을 마치고 완전출국을 하면 D-8의 체류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출국과 동시에 체류자격 및 기간이 종료되고, 가족의 동반(F-3)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가족들이 국내에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배우자는 거주(F-1), 자녀들은 학업(D-4-3)등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미리 상담하여야 한다.

**Q 198**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 전입 신고 방법은?

**A 198**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 시 필요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 체류지변경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범칙금)받는다.

## Q 199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성명 등 인적사항, 여권의 갱신, 소속기관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방법은?

### A 199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②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③ 기업투자의 경우 소속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신고 시 첨부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변경사항 입증서류

☞ 등록외국인이 상기의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과태료)을 받음.

## Q 200 ▶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출입국심사대가 있는지?

### A 200

법무부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D-8자격), ABTC카드 소지자 등 기업인들이 신속·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전용심사대(D-8자격, ABTC카드, 출입국우대카드, 외교관, 승무원 등 전용레인)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용심사대 이용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ABTC카드와 여권을 제출한다.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 회원국(19개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제공
  - 1회 입국 시 마다 체류기간 90일(복수사증과 동일)을 부여 받음.
  - 카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에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여권 갱신 후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함.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abc.kita.net> (관련 정보 및 발급 절차 참조)

\* 회원국(19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대만,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 Q 201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의 체류편의증진을 위하여 국외에서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 A 201

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외국인 및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임원 등에 대한 국내체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미화 1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의 투자경우에는 첨단기술 분야업종\*으로서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KOTRA가 정한 골드카드 발급대상인 8개 첨단기술 분야 업종(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으로 정함.

- 피초청 가사보조인으로 하여금 자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및 총영사관(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에 신청 가능)에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동거(F-1) 자격의 사증을 신청·발급 받아 입국하면 됨.
- 고용계약 종료, 고용 해지, 고용인 기업투자(D-8) 자격 상실 등으로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 이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함.

###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고용인의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1년 이상 고용사실 확인서(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 입증)
- 가사보조인 학력 입증서류
- 임직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 고용주의 소득요건 입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서류(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Q 202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생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절차는?

### A 202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만일, 기간 내 체류자격부여를 신청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전출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 <첨부서류>

- 신청서
- 자녀의 여권(여권을 대사관에 신청 접수 중인 경우 : 여권 신청 접수증으로 접수 후 보완)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1부
- 자녀의 출생증명서 ※일본, 대만의 경우 호적등본
- 자녀의 반명함판 칼라 사진 1장

#### <수수료>

- 체류자격 부여(8만 원)

## Q 203 ▶ 불법체류 중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에 의해 비전문 취업(E-9)자격으로 변경된 경우, 출국없이 다시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A 203

비전문취업 자격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절차가 제한되어, 국내에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인등기부 등록 등)을 전반적으로 진행한 후 출국하여 자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금은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Q 204** ▶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태국 전통 마사지업을 개업하여 외국인을 발마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Spa)직원 등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A 204**

국내에서 안마사나 마사지사로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안마사 자격증은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증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투자가가 국내에 마사지사업을 개업한 후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다면 불법행위가 된다.

※ 만약 일반인(외국인포함)이 안마영업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Q 205** ▶ 허위의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허위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205**

「출입국관리법」 제7조2(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Q 206** ▶ 체류 관련 비자 발급 등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는 무엇이 있는가?

**A 206**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는 중앙정부·지자체 파견 공무원 및 KOTRA 유관기관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투자컨설팅을 비롯해 투자 신고부터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방문해 직접처리 가능한 민원사무는 아래와 같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 ☞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 및 담당부처(유관기관)

민원사무의 종류	근거 법령	담당부처(유관기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신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2항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제3항	KOTRA 관세청 파견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KOTRA 국세청 파견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0조	KOTRA 법무부 파견관
근무처 변경·추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도로교통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95조	KOTRA 도로교통공단 파견관

**Q 207** ▶ 외국인투자가 동반(F-3) 배우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외국인투자가(D-8) 동일하게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A 207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시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허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D-8)의 체류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동반(F-3) 배우자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등록 외국인인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권을 갱신한 뒤 체류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 Q 208 ▶ 단기비자 소지자가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한 기한이 있는지?

#### A 208

단기 체류자격(B-1, B-2, C계열) 소지 외국인도 외국인투자절차 등 제반 절차를 거치는 등 기업투자(D-8)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로 입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업투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단기 체류자격을 가지고 기업투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 입국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기업투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신청일까지의 취업활동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입국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예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이 기업투자(D-8) 활동을 하다가 1개월 이내에 D-8 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B-1의 활동은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처리된다.

### Q 209 ▶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세금 체납을 한 경우 체류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 A 209


-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외국인의 체류민원 심사 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 기업투자(D-8) 자격 외국인 등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민원을 신청하기 이전에 국내 체납금을 납부한 뒤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류민원 심사 시 체납금이 확인 되는 경우 세금 납부명령을 받거나 체류허가기간을 짧게 부여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Q 210 ▶ 기업투자(D-8)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절차 진행 시 본국에서 투자자금을 대리로 송금할 수 있는지?

### A 210

외국인투자절차 진행 시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로 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투자자금 반입 및 대리송금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도 추가로 인정 가능하다.

※ 참고로 대리송금의 경우 ① 대리송금 사유서(대리송금이 불가피한 사유 명시), ② 은행 발행 송금 전신문(‘투자자 000를 대신하여 △△△가 송금한다.’ 등 대리송금 사실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함)을 제출해야 한다.

The image features a solid blue background with several sets of thin, white, wavy lines that create a sense of motion and depth. In the center, the number '10' is displayed in a large, stylized font. The '1' is a simple vertical bar with a small square notch at the top. The '0' is a thick ring divided into four quadrants by a vertical and a horizontal line, with each quadrant filled with a different shade of light blue and white. The overall aesthetic is clean, modern, and dynamic.

10

# 관세·통관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10 관세·통관

### Q 211 ▶ 외국인투자가가 자본재 관세감면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A 211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과 관련된 신청서 및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할 것을 알게 되어 부과고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신고수리일 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함)
-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신청이 되지 않았고, 단서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적용을 사후에 받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 Q 212 ▶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의 관세 등 감면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A 212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 감면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명	발급기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세감면결정서	기획재정부(국제경제과)
외국인투자신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국환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입금확인서(현금출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 확인서	외국환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용도설명서, 카다로그 등 (참고용)	화주, 해외공급자 등

**Q 213 ▶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인지?****A 21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일로부터 5년내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감면기간 연장승인 신청시(기획재정부장관 승인시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외국인투자 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하고, 감면기간 연장승인 신청시(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시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외국인투자 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Q 214 ▶ 자본재에 원재료도 포함되는지?****A 21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자본재는 원재료가 아닌 자본적 성격으로 장기간 물품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기계장치에 장착·합체되고 공장시설과 일체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의 일부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재료는 해당이 안된다.

**🏠 외촉법 제2조제1항제9호(자본재 정의)**

1)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2)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3)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Q 215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서 자본재를 도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따라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면제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 면제한도액을 산정할 때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국내용역대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A 2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5 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이 감면되는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의 가액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시 제외되는 수입물품 수입 후의 국내용역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Q 216 ▶ 입국시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등을 휴대하여 입국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후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 A 216

국내에 입국후(입국장을 나간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능 하며 미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 T1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 T2 여행자통관2과 ☎ 032-723-5119

### Q 217 ▶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지?

#### A 217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EDI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세관에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 이체
-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의8, 직불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의 5)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③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 ④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나, 현재 가상계좌는 휴대폰-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이사회화 고지만 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 되지 않음
- 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한 납부
  - 해외직구 이용자 개인 세금 직접 납부 건(수입신고 관세사 신청건에 한함)에 대해 알림 링크를 통해 납부 가능
- ⑥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한 납부
  -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 간편인증 ➡ 관세 조회납부

## Q 218 ▶ 수출입을 하기위해 품목번호(HSK)를 알고싶는데 확인방법과 절차는?

### A 218

품목번호(HSK)를 알고자 하는 경우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출입실적인 없는 물품 :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 심사」 신청

###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 ① 관련 규정집/인터넷을 통한 확인방법

- 방법 1 :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관련 규정집 열람  
(☞ 관세율표, HS관세율표해설서,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등)
- 방법 2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오른쪽 주요서비스 [사업자] 클릭  
➡[세계HS정보] 클릭 ➡[HS정보] ➡[관세율표]

#### ② 상담을 통한 확인 방법

- 관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방법, 관세청 고객센터 및 각 세관에서 상담을 받는 방법
- ※ 이 방법은 특별한 형식없이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담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

### 2.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한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① 의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관세법 제86조)

#### ②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 수입 및 수출신고전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unipass.customs.go.kr>
      -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참조
  - 견본 등 우편 및 방문 접수처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 연락처 : 관세평가분류원 ☎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신청
- ③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서식갑지)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서식을지)물품설명서
  - 신청물품의 견본 :
    - \* (원칙)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 벌크상 : (분말) 300g~1kg / (액상) 200mL이상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예외)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다음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견본 미제출사유서 / 대체사진 3매(컬러)
  -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Q 219 ▶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은?

### A 219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등)'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에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

####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자료실
    -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선택 및 HS code 입력

## Q 220 ▶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인증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 A 220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발급하는 권한(한-EU, 한-영,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 및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CEPA, 한-중, 한-베트남,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FTA 협정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당해 업체가 선택한 물품(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선택한 FTA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다.

##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li> <li>-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li> <li>-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li> </ul>

The image features a solid blue background with decorative wavy lines of varying shades of blue. In the center, the number '11' is displayed in a stylized, blocky font. Each digit is composed of three stacked rectangular sections: a light blue top section, a white middle section, and a medium blue bottom section. The overall aesthetic is clean and modern.

11

# 생활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 11 생활

## Q 221 ▶ 외국인이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221

체류자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가까운 대리점 방문 시 휴대폰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하다.

### 🏠 유형별 구비서류(외국인 기준)

개인	법인	미성년자
외국인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추가서류)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본인 방문 시 : 외국인등록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입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만 14세 이상 법정대리인 방문 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외국인등록증 신청인(미성년자) 외국인 등록증

- ※ 외국인등록증이 없거나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선불이동전화 이용 가능 (이동통신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이용)
- ※ 가입 절차, 이용요금의 납부, 이용정지 및 해지 등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 ※ 대표 통신사 외국어 고객센터
  - SK 텔레콤 : 080-252-5011 ([www.bworld.co.kr](http://www.bworld.co.kr))
  - KT : 080-448-0100 ([www.kt.com](http://www.kt.com))
  - LG U+ : 080-851-1004 ([www.lguplus.com](http://www.lguplus.com))

## Q 222 ▶ 외국운전면허를 한국운전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한지?

### A 222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해 그 면허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하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함.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체류자격이 D-8인 외국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 자녀(미혼)는 학과시험이 면제되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가능함.
- 제출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발급신청일 현재까지), 발급수수료 10,000원
  -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운전면허 담당자의 교환발급 서류심사 이후 담당자가 안내하는 지정병원에서 시력검사(교정시력 인정)를 받아야 함.
  - ※ 다만,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
  - ※ 신체검사 통과기준
- 한쪽 눈 시력 0.5 이상 다른 한쪽 눈 시력 0.1 이상 또는 한쪽 눈 실명 시 다른 한쪽 눈 시력 0.6 이상 되어야 함.
  -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 Q 223 ▶ 외국인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 A 223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 • 지급대상

- 임신·출산 (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지급금액

- (기본지급)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추가지급)
  - 분만취약지 대상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 • 사용 기간

- ①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②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불가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 사용 범위

- 임신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사용 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Q 224 ▶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 A 224

외국인등록증, 가족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 **건강보험신청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민원센터, 직장가입자 취급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 **신청 절차**

- 본인신청 시 : 외국인등록증 지참 즉시처리

- 가족등재 시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 등록증 지참

- 서류 유효기간

\* 국내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적국 발급 서류 : 발급일 또는 외교부 및 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 확인 수단이 없어, 자격 변동시마다 서류 제출이 원칙 (단, 동일 세대 구성원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위임 시 :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위임사유관련서류

(예 : 입원중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입원확인서) ▶ 위임은 가족만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지참)

•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서비스 단축번호 7번

- 외국어 상담 :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가능

※ 지역별 외국인민원센터 안내

- 서울시 거주 ▶ 서울외국인민원센터
- 안산, 시흥, 군포시 거주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시 거주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 인천, 부천, 김포, 광명시 거주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시 거주 ▶ 인천경기 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 외국인민원센터 업무

- 관할지역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부과 관련 방문 민원
  - 단순 수납 및 제 증명서 발급 업무 포함
  - 자동차체 신청, 가상계좌 발송 등 자격취득과 연계된 일부 징수업무 수행

**Q 225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225**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 국적의 아이만 지원 대상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2024.9.20. 기준)**

• 대상자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 지원금액

- (만0~2세) 월10만원
- (만3~5세) 월10만원(경기도 타 시군 거주자) 또는 월28만원(부천시 거주자가 부천시 어린이집 재원 시)

• 지원기준

-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만3~5세 중 월 28만원 대상자는 부천시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 신청(수시 신청 가능)

- 문의 : 부천시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 032-625-3926)

### 안산시 외국인등록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2024.9.20. 기준)

- 대상자

- 경기도 및 안산시에 체류지 등록 되어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0~5세 등록외국인 아동

- ※ 경기도 및 안산시 90일 초과 거주 및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 (만0~2세) 월 최대 26만원

- (만3~5세) 월10만원(경기도 타 시군 거주자) 또는 월28만원(안산시 거주자가 안산시 어린이집 재원 시)

- 지원기준

-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만3~5세 중 월 28만원 대상자는 안산시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

- 문의 : 안산시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 031-481-3323,3325)

### 김포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2022.9.19. 기준)

- 대상자

- 지원 자격 : 김포시에 체류지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거주 90일을 초과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

- 지원 기간 : 체류기간 동안 지원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28만 원(인)

- 지원 방법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문의 : 김포시 아동보육과 (☎ 031-980-5328)

**구리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2024.9.24. 기준)**

•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및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 구리시 90일 초과 거주 및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2024년 누리과정 보육료(28만원)에 맞춰 도비지원(10만원) 후 보육료 차액(18만원)분 추가로 전액 지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신청

• 문의 : 구리시 가족복지과 (☎ 031-550-2881)

**정읍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2022.9.19. 기준)**

• 대상자

- 지원 자격 : 정읍시에 체류지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거주 90일을 초과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
- 지원 기간 : 체류기간 동안 지원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28만 원
- 지원 방법 : 국민행복카드 지원(전자출결 시스템 사용)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문의 : 정읍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팀 (☎ 063-539-5523)

**Q 226 ▶ 한국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절차는?**

**A 226**

개인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심사기준은 발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신청 자격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로 한국에 직업이 있는 사람

• 구비서류

- 소득증빙서류(최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 발급 방법

- 가까운 은행이나 카드 영업점 방문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Q 227 ▶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 A 227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는 비슷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설립자격, 근거법령, 입학자격 등이 상이하다.

## 🏠 학교 유형별 안내

구분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	
근거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외 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설립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 외국 학교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li> <li>비영리 외국법인</li> <li>국내 학교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li> <li>제주특별자치도</li> <li>국내외 법인(영리법인 포함)</li> </ul>	
설립 요건	설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거주 외국인 자녀교육</li> <li>해외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의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li> </ul>
	설립 가능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자유구역</li> <li>제주특별자치도</li> <li>행정중심복합도시(고등)</li> <li>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 기업도시(고등)</li> <li>새만금지역</li> <li>평택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설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li> </ul>
	설립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 시도교육감</li> <li>- 고등 : 교육부장관</li> </ul> </li> <li>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 제주도교육감</li> <li>- 고등 : 제주도지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영리법인이 학교 설립 시 교육부장관 등의 필요</li> </ul> </li> </ul>
입학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의 자녀</li> <li>3년 이상 해외 거주 내국인</li> <li>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li> </ul>	
내국인 입학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등 : 총 정원의 30%(사도 교육규칙으로 50%까지 확대 가능)</li> <li>고등 : 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정원의 30%(사도 교육규칙으로 50%까지 확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li> </ul>	

구분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
설립운영 현황	[유초·중등(3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드익송도국제학교</li> <li>• 대구국제학교</li> <li>•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유치원(1개교)</li> <li>• 외국인학교(38개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국제학교</li> <li>• NLCS Jeju</li> <li>• Branksome Hall Asia</li> <li>• SJA Jeju</li> </ul>
	[고등(5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뉴욕주립대학교 SBU(인천)</li> <li>•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인천)</li> <li>• 조지메이슨대(인천)</li> <li>• 유타대(인천)</li> <li>• 켄트대(인천)</li> </ul>		

※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안내사이트([www.isi.go.kr](http://www.isi.go.kr))에서는 외국인 유치원부터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Q 228 ▶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있는지?

### A 228

전국 주요대학 한국어학당, 외국인지원센터와 민간단체에서 온/오프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 🏠 무료 한국어강좌

#### 1. 오프라인 강좌

- 서울글로벌센터 : [global.seoul.go.kr](http://global.seoul.go.kr)
- 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센터 : [www.ifez.go.kr](http://www.ifez.go.kr)
- 부산국제교류재단 : [www.bfic.kr](http://www.bfic.kr)

#### 2. 온라인 강좌

- 고려사이버대학교 : [gkorean.cuk.edu](http://gkorean.cuk.edu)
- 국립국어원 바른소리 : [www.korean.go.kr/hangeul/cpron/main.htm](http://www.korean.go.kr/hangeul/cpron/main.htm)
- KBS Let's Learn Korean : [http://rki.kbs.co.kr/learn\\_korean/lessons/e\\_index.htm](http://rki.kbs.co.kr/learn_korean/lessons/e_index.htm)
- 누리-세종학당 : [nuri.iksi.or.kr](http://nuri.iksi.or.kr)

## 🏠 유료 한국어강좌

### 1. 오프라인 강좌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iie.khu.ac.kr](http://iie.khu.ac.kr)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www.yskli.com](http://www.yskli.com)
- 서강대학교 한국어강좌 : [klec.sogang.ac.kr](http://klec.sogang.ac.kr)
-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 [klc.korea.ac.kr](http://klc.korea.ac.kr)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lei.snu.ac.kr](http://lei.snu.ac.kr)
-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 [koreansli.skku.edu](http://koreansli.skku.edu)
-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 [korean.ac.kr](http://korean.ac.kr)
-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 [lei.pusan.ac.kr](http://lei.pusan.ac.kr)
- 한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www.hskli.com](http://www.hskli.com)

## Q 229 ▶ 한국의 주거 임대차계약방식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 A 229

대표적으로 전세, 월세, 반전세 등이 있다.

#### 1. 전세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임.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음.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음.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남.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 월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임.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을 보증부월세라고 하며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을 무보증 월세라고 함.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집세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내는 경우가 많음.

### 3. 반전세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동일한 개념임. 일반적으로 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전세금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돌리는 계약 형태를 뜻함.

## Q 230 ▶ 외국어 가능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리스트가 있는지?

### A 23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공인중개사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로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서울시 홈페이지 등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외국어 가능한 공인중개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 리스트 :

[www.kar.or.kr/pbusiness/network\\_korea.asp](http://www.kar.or.kr/pbusiness/network_korea.asp)

※ 이 밖에도 각종 중개매물소개 어플리케이션(직방, 다방, 한방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물을 한눈에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 직방 : [www.zigbang.com](http://www.zigbang.com)
- 다방 : [www.dabangapp.com](http://www.dabangapp.com)
- 한방 : [www.karhanbang.com](http://www.karhanbang.com)
- 네이버부동산 : [land.naver.com](http://land.naver.com)

※ 부동산중개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다.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www.kar.or.kr](http://www.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Q 231 ▶ 국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주소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 A 231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본인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지 입증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체류지 입증 서류(예시)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Q 232 ▶ 한국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처리하는 방법은?

### A 232

한국에서는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때 쓰레기는 종류별로 지정된 봉투에 넣어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

#### 1. 일반쓰레기(폐기용 쓰레기)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용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림.
- 종량제 봉투는 지역 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지역마다 일반쓰레기를 담는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봉투 색, 판매하는 크기가 다르므로 해당지역에서 확인한 후 구매하여야 함.

#### 2. 재활용쓰레기(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정해진 분리 수거공간에 배출함.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분리수거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음.

#### 3.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빼고 쓰레기 수거함이나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함.
- 지자체별로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도 함.
  - ※ 음식물쓰레기로 헛갈릴 수 있는 일반쓰레기 품목
    - 다음 품목들은 반드시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종류	품목
채서류	양파껍질,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고추대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견과류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딱딱한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찌꺼기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차류(녹차, 한약 등) 찌꺼기

#### 4. 대형폐기물

- 못쓰게 된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쓰레기는 관할지역에

신고한 후 처리함. 동 주민센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구(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스티커를 구입한 후 해당제품에 붙여서 지정된 분리수거일에 내놓으면 됨.

### Q 233 ▶ 위급상황 발생 시 한국어를 못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 A 233

국번없이 112 혹은 119로 전화하거나 bbb 무료 언어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 112 종합상황실에서는 외국인이 신고를 하면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 신고자와112, 통역 서비스 3자 통화를 통해 신고내용을 접수·처리하고 있음.
- 화재, 긴급의료상황 시 119 안전신고센터로 전화하면 112와 동일한 통역서비스를 통해 신고 접수처리가 가능함.
- bbb 코리아는 대표번호는 1588-5644를 누른 후 ARS 안내에 따라 통역을 원하는 언어의 내선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 자원봉사자의 휴대전화로 바로 연결되는 언어통역서비스 임(20개국어 지원).

#### ※ bbb 애플리케이션 이용안내

- bbb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속 후 통역이 필요한 언어의 내선번호를 먼저 선택 하면 ARS 안내를 거치지 않고 해당 언어의 봉사자 휴대폰으로 직접 연결

#### ※ 'Emergency Ready' 애플리케이션 :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알리미

-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해당 앱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서비스하며 119 신고는 물론 응급의료시설, 경찰서, 소방서, 대사관 위치 정보 및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푸시 알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 일반민원상담 : 110 국민콜

- 긴급하지 않은 생활불편 및 일반민원상담 (20개국어 지원)

본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을 기초로 하여 KOTRA 외투·국내 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작성한 것으로 본 책자의 내용이 관련 주무부처의 해석과 다를 경우 해당 부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5년 2월  
**주소** (06792)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7  
Invest KOREA Plaza(IKP) 종합상담실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investkorea.org](http://www.investkorea.org)  
**ISBN** 979-11-402-1275-0 (95320)

Copyright 202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5**  
**외국인투자상담 FAQ**